

제415회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6월14일(금)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의실

의사일정

-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8)
- 업무보고
 - 법무부 소관
 - 감사원 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헌법재판소 소관
 - 대법원 소관
 - 군사법원 소관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추가)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추가)
- 자료제출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1.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2
o 소위원장(김승원·장경태·전현희·김용민) 인사	5
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8)	6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7
4.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7
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7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9
6. 자료제출요구의 건	9
3. 업무보고	9

-
- 가. 법무부 소관
 - 나. 감사원 소관
 -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라. 헌법재판소 소관
 - 마. 대법원 소관
 - 바. 군사법원 소관
-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청래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하고 고유법안을 심사한 후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및 참석자 명단 등은 회의석상에 배부되어 있으며 보고사항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 역시 일부 위원님들께서 불참한 가운데 열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법을 준수해 정당하게 구성된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하루빨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검찰개혁 등 국민께서 우리 위원회에 부여하신 시대적 소명을 조속히 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1시01분)

○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구성된 4개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은 위원장이 간사님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회의에서 여당 위원님들께 어제까지 소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국회법 제48조 및 제57조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소위원 선임(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선임 및 선출(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고유법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모두 8인으로 김승원 간사님께서 소위원장으로 맡고 소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군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위원님,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장동혁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타 위원회 소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모두 11인

으로 장경태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은 맡고 소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용민·박지원·이건태·이성윤 위원님, 국민의힘 김은혜·박형수·정점식·조정훈 위원님,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모두 8인으로 전현희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은 맡고 소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군택·이건태·이성윤·장경태 위원님, 국민의힘 박형수·정점식·조정훈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끌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모두 6인으로 김용민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은 맡고 소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지원·서영교 위원님, 국민의힘 김은혜·유상범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은정 위원** 예,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의 있습니까?

○**박은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은정 위원**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소위 구성과 관련해 간략한 신상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의 봉에 대한 제2소위 배정을 재고해 주시고 제1소위에 배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거듭 같은 요청을 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만 이 요청은 제가 개인적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690만 국민들의 이유이기도 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 한 사람의 욕심이 아닌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검찰개혁을 위해 개혁 입법들을 책임 있게 처리하기 위한 충정의 발로라는 점을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여러 특검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저의 전문성을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앞선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님도 비교섭단체 소속이었지만 1소위에 배정된 선례가 있습니다. 1소위를 더불어민주당만이 과반을 넘도록 구성하기보다는 비교섭단체 소수 정당과 함께하는 것이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가장 많은 의석수를 지닌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의 협치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비교섭단체 1인에 대한 제1소위 배정이 불가능하다면 소위원 선출을 표결로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1소위의 교섭단체 의석 배분 7명을 제외한 1석만을 본다면 300명 국회의원 비율로도 0.02명이 더 많고 18명 법사위원 비율로도 0.01명이 더 많은 비교섭단체를 한 선례도 있는데, 불구하고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의 의견만을 반영한 소위 구성이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이 부분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승원 위원** 예, 의사진행……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승원 위원** 우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 법사위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중인 채 택 여부 등 아주 중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출석하지 않은 국민의 힘 위원들께 다시 한번 법사위에 출석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채 상병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위 구성도 함께 있는 날입니다. 오늘 박은정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하셨는데 조금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소위, 2소위에 대해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비롯한 저도 조국혁신당 분들과 또 개별적으로는 박은정 위원님과 서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박은정 위원님께서 2소위에 가시는 것을 양해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는데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계산식에 있어서 저희는 국회법에 따라서 법사위 행정실과 몇 번을 다 겸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점 이하가 틀리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산식에 관해서 우리 행정실과 논의를 하셔야 된다, 그것은 사실관계가 틀리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채 상병 특검법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들은 우리 민주당 위원들을 비롯해서 같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며 또 박은정 위원님께서는 여러 전체회의라든가 또 안건조정 회의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법사위가 지금 현안을 앞두고 출발을 순조롭게 또 국민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와 뜻을 모아 주시기를 민주당 간사로서 간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의 심정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 열정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해서 한시가 급하고 또 오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문발차하는 차원에서 이미 지난 화요일 또 어제도, 지난번에는 1시간, 어제는 1시간 반 정도 저와 대화를 충분히 나누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해한 것으로 저는 인식을 했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또 말씀을 하시니 다시 한번 박은정 위원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꼭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박은정 위원** 예, 표결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지금 가야 할 길은 바쁘고 또 이 문제로 오늘 소위 구성을 하지 않는다면 채 상병 특검법안을 소위로 회부할 수가 없습니다. 박은정 위원님께서도 소위에 회부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은 아마 인식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박은정 위원님의 저 주장은 저는 일리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 부분 또한 적절한 시기에 박은정 위원님의 생각을 놓고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테니 표결 안 하고 그냥 가면 안 되겠습니까?

○**박은정 위원** 표결해서 기록으로 남겨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지금은 어차피 속기록이 다 돼 있어서 표결을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표결을 원하십니까?

○**박은정 위원** 예, 표결을 원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1인 중 찬성 10인, 반대 1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 주장, 의견들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채 상병 특검법안은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또 시급히 처리해야 될 절차가 있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오늘 소위원회나 소위원장은 선출하지 않으면 일에 중대한 또 심대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소위원회를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박은정 위원님은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소위원장(김승원·장경태·전현희·김용민) 인사

(11시13분)

○**위원장 정청래** 소위원장님들 선출을 축하드리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법안심사1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21대 후반기부터 법사위에서 법사위 고유법안뿐만 아니라 타위법도 같이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21대 국회 법사위에 1600여 건의 법안이 빛도 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1소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논의를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해서 국민이 원하는 많은 법들이 우리 전체회의 또 본회의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태 위원 법사위가 판문이 아닌 통로로서 2소위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17개의 타 상임위 법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2소위가 열심히 일하는 소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전현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현희 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지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기관들이 특활비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사실상 남아 있는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국가의 재정준칙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그리고 청탁금지법 등에 사용과 운용에 있어서 위반 사안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용민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민 위원 1소위만큼 중요한 청원심사소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들의 청원권을 잘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만 대상 기관 중 법무부와 군사 법원 기관장인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오늘 불참하겠답니다.

국회법에 따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합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 합니다.

기관장들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시는 상황 속에서 의사일정 2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8)

(11시16분)

○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2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쳤으므로 오늘 소위원 선임이 완료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부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은정 위원님도 없으시지요, 이 부분은?

○**박은정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의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께서는 회의 불출석에 대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혀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간사님과 협의하여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장관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18분)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국회법 제71조, 제77조에 따라 각각 의사일정 4항 및 5항으로 추가하고 이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입법청문회는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박성재 법무부장관,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증인 및 2인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서 및 증인·참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업데이트된 최신 자료가 나올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위원장님,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박지원입니다.

업무보고차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나오신 대법원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감사원, 공수처, 현법재판소 기관장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가 지적한 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제사법위원회는 합법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여기에 출석하셔야 위법이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바뀌면 우리나라 정치가 살고 경제도 삽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처럼 바뀌지 않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 있고 대통령 내외분은 험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왜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지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국민들은 빨리 국회를 개원해서 일을 해 달라. 민생, 남북관계, 민주주의, 외교가 총체적으로 파탄 나고 있는데 선거가 끝났지만 왜 국회가 개원하지 않느냐 이것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야 국회의원 누구도, 선거 유세를 하면서 ‘내가 국회의원 되면 국회 보이콧하고 국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국회에 열심히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반쪽 국회다’ 하는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야권이 단독 국회를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은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독주를, 독재를 우리 국회는 저지시킬 그리고 고쳐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채택되겠지만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이 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대통령처럼 다시는 국민을 무시하지 않도록 합법적인 국회에 꼭 참석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잘 알겠습니다.

우리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기도 하고 또 최신 업데이트된 것도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청문회는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박성재 법무부장관,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포함하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숫자를 좀 수정하여 총 12인의 증인 및 3인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서 및 증인·참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다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25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청문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 법 제71조와 제77조에 따라 간사님과 협의하여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6. 자료제출요구의 건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국방부 등 청문회 관련 기관에 요구하실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오늘 오후 6시까지 위원장실에 제출할 것을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상 기관은 오늘 요구한 자료를 6월 18일 오후 6시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업무보고

가. 법무부 소관

나. 감사원 소관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라. 헌법재판소 소관

마. 대법원 소관

바. 군사법원 소관

(11시26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새로운 제22대 국회 법사위가 소관 기관의 업무와 주요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질의를 통해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기관장님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이 곧 국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회법을 위반하여 불참한 기관을 제외하고 의사일정에 적시된 바와

같이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법재판소, 대법원 순서로 각 기관장님들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현안 위주의 간략한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할까요, 보고를 받고 할까요?

○**위원장 정청래** 지금 하시지요.

○**김용민 위원** 저는 불출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용민 위원** 조금 전에도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 불출석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질타를 하셨는데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나온 게 단순한 사안이 아니에요.

헌법 62조 2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입니다.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다거나 재량에 따라 불출석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답변하여야 한다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 그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국회법 121조 3항에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의무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의무입니다.

이런 조항이 왜 들어갔느냐? 당연히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제도적 보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부의 관료들, 국무위원 등을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불러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장해야 행정부의 독주와 폭주를 견제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단순히 야당만 지금 하니까 못 오겠다 이런 식의 심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것은 경고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강력한 법에 따른 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임 건의나 탄핵 같은 것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대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도 있고 해서 국회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2대 법사위에서는 타 상위 법안을 논의할 때도 지금까지 차관이 출석했다고 그러는데 차관 출석을 불허하고 장관 출석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이전의 법사위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장관이 불출석해도 처벌받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단호하게 끊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명심하시고 각 기관장들께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알아서 잘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중간광고하고 나서도 바로 앞 화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 주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장님들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현안 위주의 간략한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재 감사원장이 국외 공무출장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최달영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이 허락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국회 입법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법제사법위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원장을 대신하여 오늘 처음으로 감사원을 소개하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장님이 예정된 국제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하게 사무총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을 운영 기조로 삼아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감사과제 수행에 매진해 왔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정책제도를 보완하는 등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힘쓰는 한편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맞추어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감사운영의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감사운영 전반과 조직문화를 쇄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국회의 원활한 국정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원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1사무차장 현완교입니다.

제2사무차장 김영관입니다.

공직감찰본부장 신치환입니다.

국민감사본부장 최정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해식입니다.

(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쪽부터 20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21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면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미국 감사원 등 선진 감사기구로부터 감사원 운영을 외부평가받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인이 지향해야 할 감사인 현장 등 정립을 추진하고 절차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감사절차 보완 필요사항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2면입니다.

2024년도 감사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면, 감사운영 기조입니다.

감사원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을 운영 기조로 독립성과 책임성, 공정과 신뢰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4대 전략목표와 감사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면, 2024년도 주요 감사계획입니다.

먼저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유도를 위해 국가채무관리체계와 주요 연기금 등의 재정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과 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분석하여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원인 등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요인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25면입니다.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증제도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신기술, 신사업과 관련된 인력양성체계 등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 기본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중점을 두고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재정 부정지출을 상시 분석하여 점검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회 관련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운 공수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첫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소임을 안고 출범한 이래 그동안 수사기관으로서 기틀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기 공수처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기관 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공수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진 차장직무대행입니다.

이형석 기획조정관입니다.

차정현 수사기획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일반현황하고 업무처리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 현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공수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의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력 운용과 업무체계의 효율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검사 및 수사관 결원 직위를 우수 인력으로 충원하는 절차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 수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은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수사 업무에 집중하는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결재선 및 보고체계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사 인력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그간 공수처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과학수사 역량 강화 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일소라는 수사기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검찰 및 경찰과 핫라인을 마련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업무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업무체계 구축을 위하여 검경 수사 인력의 공수처 파견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수사기반 확립을 위한 사항입니다.

공수처는 수사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적·물적 체계 보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공수처 운영 과정에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인력 증원이나 수사·기소 대상 확대와 같은 제도개선 사항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안 유지 및 수사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독립 청사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추진된 공수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정원 확대 등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헌법재판소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2대 국회의 개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판지원실장 하정수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혁입니다.

심판정보국장 이영일입니다.

(인사)

참고로 사무처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5쪽 이하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 상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쪽 심판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월 말 현재까지는 위헌법률심판 7건, 권한쟁의심판 1건, 헌법소원심판 997건 등 1005건의 사건을 접수하였고, 처리 사건 수는 총 1321건으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51건, 헌법소원 인용 결정 20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27쪽 이하입니다.

효율적 심판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심판 업무를 원활히 지원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헌법재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이하 인적 역량 강화입니다.

재판의 신속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헌법연구관 증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인사 제도 개선과 개별 구성원들의 직무역량 증진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1쪽 이하입니다.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근무 공간 부족, 청사 안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남통합청사 건립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헌법재판제도와 관련한 분석과 연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이하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5개년 계획하에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이하 국제 활동을 통한 지식의 교류와 축적입니다.

국제회의 참석, 주요 헌법재판기관 초청 등 국제교류 사업을 헌법재판 관련 지식의 공유와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활동 및 상설 연구사무국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리더십을 발휘하고 아시아의 민주주의·법치주의 발전과 인권 보장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헌법이론의 발전과 헌법재판 실무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충실히 연구하고 다양한 수요자에 대하여 적합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87년 9차 개헌 논의 당시 국회에서 독립된 헌법재판 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있기까지 국회의 역할이 실로 지대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9월에 한 분 그리고 10월에는 재판소장을 포함하여 국회에서 선출하신 세 분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부 구성의 공백 없이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대법원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윤성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형근 사법지원실장입니다.

원호신 사법정보화실장입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와는 독립된 기관이지만 편의상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 중심으로 법원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일반현황과 사건통계 부분은 책자 1쪽부터 40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부족한 법관 수와 법관의 고령화를 비롯한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롯된 재판 지연 상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해결에 앞서 가능한 모든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법원은 판결서 작성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답변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민사·가사 판결서 적정화 실시 재판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적정한 판결서 방식을 발굴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잦은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한 심리의 단절·중복을 피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법관의 사무분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재판장의 원칙적인 사무분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재판장 아닌 법관의 원칙적인 사무분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장 및 지원장도 원칙적으로 재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숙한 재판 능력을 가진 법원장과 지원장이 사법의 본질적 기능인 재판 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과 좀 더 소통하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양형에 반영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서 2024년 1월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형사공탁이 있는 경우 공탁소에서 검찰에 즉시 팩스로 통지하게 하여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소송기록 열람·복사·송달 시에 법원이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게 조치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면접교섭센터는 부모의 갈등이 심화되고 가족관계가 악화되어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안정적 면접교섭 기회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장소로서 자녀의 복리보호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이혼 후 적응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2024년 3월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원거리 거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1쪽입니다.

법원 간, 지역 간 사법통역서비스 편차 해소 그리고 질적 향상을 위해서 법원에서 인증한 통역인을 채용하여 상근하게 하면서 비디오 등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정통역센터를 2024년 7월부터 운영함으로써 외국인과

이주민의 사법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187쪽입니다.

도산사법서비스의 지역 편차를 극복하고 도산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대전·대구·광주 고등법원 권역 내에도 회생법원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원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동의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절차 안내와 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도산 절차 수요자에 대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199쪽 이하입니다.

기존의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그리고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도입 법률의 시행에 대비하여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들의 사법 접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일정한 등기 유형의 등기신청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기본 정보를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라 관련 시스템 구축을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여성이 의료기관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여 보호출산제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아동의 출생정보 등 출생사실 통보 그리고 전산정보시스템의 운영 방법과 절차,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대법원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 이하입니다.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 운영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등 사법부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반면, 그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적 뒷받침이 무산되어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화된 재판 지연 현상 그리고 사법 신뢰 저하에 따라 국민을 위한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과 반수를 법관이 차지하던 것에서 진일보하여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을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법원조직법에 법적 근거가 있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사법행정의 자문기구로서 제1기 그리고 제2기에 이어 제3기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재판절차, 법관인사제도, 법원공무원 관련 제도, 사법정보화에 관한 내용이 안건으로 부의되었습니다.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각종 사법정책 관련 사법제도가 개선되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 주시는 소중한 제언과 질책은 재판제도 그리고 사법행정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즉석에서 답변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더욱 신중하게 답변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감사합니다.

처장님, 신중하게 답변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채 상병 특검법안 증인을 의결하고 가결해서 증인 채택을 했는데요. 아까 그냥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다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누군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증인 명단을 제가 먼저 불러 드리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서 채택된 증인의 명단을 제가 빠르게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박성재 법무부장관, 증인 신원식 국방부장관, 증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증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증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증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증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증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증인 이용민 포병여단 포7대대장, 증인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증인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증인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참고인 김정민 변호사, 참고인 김규현 변호사, 참고인 김경호 변호사 이렇게 채택되었다는 것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려면 먼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경기 남양주병 출신 김용민입니다.

공수처장님,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불출석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빠르게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한 문제니까.

마이크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재소환을 요청합니다.

○**김용민 위원** 재소환해도 계속 불출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체포 또는 구속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또 최종적으로는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재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속시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여러 번 소환해서, 구인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일반적인 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그러면 헌법에 피고인의 재판 출석 의무가 있습니까? 명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명문의 규정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공수처장님, 헌법에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가 명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없습니다.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규정들만 있지 출석 의무가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장관의 위원회 출석 의무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안 나가거나 재판에 안 나가면 구속되고 체포되고 하는데 알고 보니 헌법에 명문의 의무 규정도 없어요. 그런데 헌법에 명문의 의무 규정이 있는 장관, 국무위원들이 이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공수처장님? 답변하기가 어려우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김용민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지금 가장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한편 또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건이 해병대 채 해병 사건입니다. 지금 수사 진행 중이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김용민 위원 처장님, 마이크를 조금 더 내리시고, 그래야 답변이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언제 종결할 것 같습니까,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종결 여부도 수사 진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데 진행되는 수사 사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김용민 위원 신속하게 종결 가능합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까? 그 정도만이라도 답변해 보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은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는 하나 가용 수사 인력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수사4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김용민 위원 맞습니까?

보니까 검사가 부장검사 포함해서 5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김용민 위원 수사관은 몇 명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수사관은 지금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되는데 한 10여 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10여 명. 그러면 총 한 15명 정도 내외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네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김용민 위원 그런데 수사4부에는 지금 채 해병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들이 배당이 돼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다른 사건들도 또 많이 배당되어 있지만 채 해병 사건을 중심으로 가용 수사 인력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 **김용민 위원** 혹시 다른 수사부에서도 인력 지원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수사4부만 전담하고 있나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이번에 소규모 인사개편을 통해서 2명의 수사관이 증원되는 정도이고 다른 부서에는 또 다른 사건들이 배당되어 있으므로 수사 인력, 검사 등을 4부로 지금 배치하기는 좀 어려운 수사 인력 상황입니다.

○ **김용민 위원** 많은 국민들께서 좀 혼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예전에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서 출국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 정부에서는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된 사람에게 출국금지를 한 것에 대해서 출국금지 해제를 공수처가 동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갔었어요. 어떻습니까?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부분은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즉답은 할 수 있는데……

○ **김용민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민 위원** 그런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했지요? 맞습니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 **김용민 위원** 일종의 수사 방해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사 방해라고 느껴지십니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다른 부처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내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서 우리 처에서는 수사 진행과 관련해서 그런 의견을 드린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 **김용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신청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종섭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건 맞습니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부분도 지금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된……

○ **김용민 위원** 이미 보도가 된 것이라서 질문드립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렇지만 제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해 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좀 부적절한 면도 있습니다.

○ **김용민 위원** 그러면 따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여러 가지 수사기밀 또는 수사 공개로 인한 부작용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위원님들의 요청에 적극 응할 생각입니다.

○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미 올 1월 달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 이종섭 장관이 공범으로 적시됐는데, 그런데 이종섭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개인 스마트폰은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라고 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여부 또 통신영장 발부 여부 등 이런 부분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위

원님들께 의혹을 해소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수사 진행에 관한 것은 즉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질문드리는 이유가 있었는데.

최근에 수사4부에서 수사를 하는 데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요. 다른 사건들을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당해서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제가 수사처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어쨌든 국민들의 관심이 가는 채 해병 사건이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사건 배당으로 인해서 수사를 저해한다든지 이런 요인은 없다라고 공수처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그런 부분, 수사계획상 또 수사의 진행과 관련 돼서 이 단계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안 나온 사람 부를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안 나오셨습니까?

질의 순서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음은 김도읍 국민의힘 질의,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님 질의 순서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호명을 했습니다.

안 나오셨군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공수처장님,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상 공직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종결 처리를 발표했습니다. 서면조사, 대면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수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권리위 결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를 처장님 아시겠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박균택 위원** 작년 12월에 공수처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맞습니다.

○**박균택 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여하튼 저희들이 수사 착수한 사건들은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위원님께 보고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박균택 위원**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인·고발인 조사 정도는 했겠지요? 그것도 보안입니까? 법에 나오는 절차인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수사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또 할 예정입니다만 수사가 어디까지……

○**박균택 위원**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아닙니다. 그 기록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박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 외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처분을하신 적이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별도로 외부에 드러나는 처분을 한 것은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 주요 업무보고 현황에도 그 사건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안 중요한 사건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부분, 중요한 사건이지만 저희들이 여타의 또 다른 중요한 사건들을 보고하다 보니 그 부분이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균택 위원** 결국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박균택 위원**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안을 지키는 선에서 서면으로라도 뭘 했는지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공개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없는 한에서 위원님께 성실히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대통령도 부를 각오가 돼 있다고 인사청문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일반론으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린 정도입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대통령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그보다는 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어떤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그다음에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권익위보다는 낫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법무부장관 오시면 질의할 게 많았는데 그분이 안 왔고 또 이화영 사건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했는데 제출을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눈치보다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검찰을 옹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런 국무위원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수긍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재판을 담당했던 법원행정처장님께 불가피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장님, 인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국민들 수준에 미흡한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유념하고 국민들 수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재판 내용이 국민의 상식이나 논리에 어긋나는 그런 사례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정처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 삼심제하에서 1심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바로잡고 항소심에서 잘못된 부분은 대법원에서 바로잡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또한 저희들이 사법연수원에서 법관연수 교육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도록 법원행정처로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사건, 이번에는 수원지법에서 선고가 됐는데 처장님, 혹시 판결문 분석해 보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송구스럽지만 분석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박균택 위원** 아마 바빠서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저로서는 수긍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게 제공했다는 800만 불, 약 100억 원의 돈이 과연 쌍방울의 투자와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부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 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그쪽의 이익을 위한 뇌물이냐 이게 다툼이 되는 사건인데 결국 검찰에서는 그렇게 야당을 상대로 잔인하게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100% 그대로 받아 주는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을 했고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반영을 했고 변호인이 제기한 의견서에 대해서는 다 배척을 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이유가 쌍방울과 조선아태위, 북한 쪽과 체결한 합의서가 2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부정해 버립니다. 국정원의 문건도 다 부정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아주 정상적이고 건실한 기업가인 것처럼 판결에 얘기를 해 놨는데 조폭 출신에 불법 대부업에 주가조작 전과까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성태가 검찰에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성태는 검찰에 의해서 술한 회유를 받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보안법, 해외 재산 도피, 주가조작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면제를 받고 기소를 면제를 받았는데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라고 재판판이 표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와 이재명 지사가 남이 바꿔 주는 통화를 했던 것도 둘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인 것처럼 거시를 해 놨는데 100억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으면 그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긴밀해야 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검찰도 인정하고 당사자들도 인정하고 재판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술좌석에서 바꿔 주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관계로 평가를 해야 맞는 것이지 오히려 관계가 형성이 된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고 판결에 반영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쳐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는 대로 판결 한번 읽고 분석도 한번 해 보신 다음에 국민의 상식이나 논리와 괴리되는 이 판결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법행정 방향을 결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항소심에서 아마 충실하게 사실심리가 될 것으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판결 시간 날 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요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러면 텔레비전 생중계가 될 때 무음 처리가 돼서 입 모양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좀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1분의 시간을 더 달라고 그러면 추가 발언시간 1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요청해 주시면 1분에 한해서는 더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김용민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만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공수처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출신이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헌법 제84조에 보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형사불소추권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현직 대통령 형사불수사권은 없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현직 대통령 형사불조사권 없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확실하게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없지요, 이런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대통령은 형사불소추권이 있는데 불수사권, 불조사권은 없기 때문에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는 받아야 되겠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원칙론적으로 수사 대상은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만약에 채 상병 특검법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혐의점이 있다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됩니까,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데 대해서는 제가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혐의점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당연히 수사 를 받아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공수처장님께서 나름 소신과 용기를 갖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합니다.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범죄, 형사상 의 의혹이 있고 그 의혹이 혐의점이 되고, 혐의점이 인정되고 또 인정한 상태에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공수처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박은정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보좌진 없습니까, 여기?

그러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그러면 이건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건태 위원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형법은 동일한 시기에 한 사람이 2개 이상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른바 동시범·경합범에서 유기형을 선고할 때 아무리 많은 죄를 중첩하여 범한 사람이라도 가장 중한 혐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건태 위원 그래서 동일한 시기에 여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재판을 나누어 받는 것보다 한 재판부에서 한꺼번에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이익이 됩니다. 이것을 동시 심판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처장님,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이른바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로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모두 사실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재판부도 첨부된 전과기록 조회를 통해 이 부분 사실을 확인하여 심리의 경과에 너무 차이가 나는 등 부득이한 이유가 없으면 재판의 이송과 변론 병합 등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이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도 검사나 판사의 판단에 따라 함께 또는 분리 기소 심판하느냐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 상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동시적 경합범을 한 번에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같이 재판하는 것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 여부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가급적 한 재판부에서 한꺼번에 심판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건태 위원 검찰은 작년에 이재명 대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기 전에 성남지청에서 수사한 성남FC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 후에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을 한꺼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한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 백현동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되돌려 보내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대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하여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지만 법원은 이 두 사건을 재판부를 나누지 않고 모두 33부에 배당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33부에 배당한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일반적으로 병합해서 처리할 때는 그와 같이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만약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을 범죄사실로 했던, 작년에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더라면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해야 했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검찰의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원의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처장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는 게 합당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런데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음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에 되돌려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27일, 구속영장 기각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24년 6월 12일 검찰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유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만은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전력을 감안할 때 스스로 한 이송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서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당한 검찰권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잘 아시겠지만 검찰의 그와 같은 조치의 내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은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고,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3 일씩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제1당의 대표가 일주일에 4일씩 재판을 받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역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검찰이 수원지방검찰청과 성남지청으로부터 각각 이송을 받아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한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과 이번에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사건 이송의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사건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이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을 골라서 일부러 이제명 대표를 기소한 것이고 이것은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검찰 폭주의 시대에 검찰 폭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법원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검찰의 동시 심판 이익 박탈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우리 사법부 모든 판사,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법부 독립 판점에서 소정의 역할을 다 잘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성윤 위원** 전주을 이성윤입니다.

공수처장님, 제가 검찰을 나와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 첫 번째로 받은 제보도 두 번째로 받은 제보도 검사에 관한 제보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얼마 전에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라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추악한 민낯을 국민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지저분한 단어가 반복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경에 울산지검에서는 ‘술 익는 작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검사장, 차장, 부장 등 30명이 모여 지검 내 1층 간부식당에서 회식을 합니다. 검사장은 수십 명의 진도홍주와 연태고량주를 준비했고 간부들 또한 각자 특활비로 술을 구입했다고 하며 구내식당 업자에게도 특활비로 소주와 맥주, 안주를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수가 높은 연태고량주, 폭탄주로 인해서 대부분 만취 상태였고 어떤 부장검사가 테이블을 밭로 차는 바람에 술잔이 수십 개가 깨지고, 부장검사는 수사관을 때리고 차장검사는 그 부장검사를 억 억 소리가 나도록 배를 때렸다고 합니다. 일부 부장검사는 검찰청 복도 바닥에 드러누워 자기도 했다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날 아침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똥이 대량 빨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똥이 묻은 모 대학교 기념품 허리띠를 수건걸이에 걸어 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어떤 검사의 소행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부장들이—평일입니다—참석한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검사가 ‘왜 똥을 싸고 지랄이야’라고 하자 다른 검사는 자기는 똥을 쌌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공적인 회의 시간에 이런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들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검사장은 총무과 직원을 불러 CCTV를 확인한 후에 함구를 지시했고 어떤 부장검사가 환경미화원에게 현금을 주어 수습했다고 합니다. 폭행당한 수사관은 부장을 고소하려고 했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날 사건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똥 사건의 소문이 계속 퍼지자 지목된 검사는 카카오톡에 ‘똥 저 아니에요. ㅋㅋㅋ 제발 좀’ 이렇게 프로필에 담긴 것을 보면 이 의혹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처장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이 이용하는 공용 건물에서 검찰청 직원이 폭탄주를 이렇게 마시고 난투극을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대량의 똥을 뿐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얘기가 금시초문이라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성윤 위원** 이 사건 관련 검사들 대부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일부는 검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늦어진다고 검찰청 현관에 개똥을 뿐린 국민 기소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사건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참 관심을 가지고 다룰 수 밖에 없는데 저희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지 그런 부분은 또 좀 따져 봐야 되니까, 저는 일반론적으로 검사님들의 행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라면 원칙대로 굉장히 열심히 수사할 생각입니다.

○**이성윤 위원** 알겠습니다.

특활비를 사용해서 술을 대량 구입했다 하는데 이것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다 하다 검찰이 이 지경까지 망가졌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울산지검의 특활비 사용 내역,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용 건물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만취하여 서로 폭행하고 똥을 싸고 현금으로 수습한 의혹을 반드시 감찰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의결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똥 저 아니에요’라고 한 검사에 대한 또 다른 제보입니다.

이 검사는 2022년 7월경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사건을 수사 중에 엉뚱한 수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후에 수사관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수사관의 아내가 말기 암 진단을 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해당 수사관은 신속히 무혐의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가 바뀌도록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고 끝까지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 투병 중인 수사관의 아내가 대검 홈페이지에 간청하는 글까지 올렸는데 검사는 수사관을 불러 오히려 ‘이런 일로 진정까지 해서 난처하게 하냐’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후 수사관은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 사건을 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않아서 피의자로 낙인 찍혀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처장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혐의도 없는 사람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면 사과는 하지 못할망정 도리어 이렇게 겁박해도 되는 것입니까? 직권남용으로 처벌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도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사건 얘기가 처음이라서 좀 놀랍게 들리는데요. 일반론적으로 어찌하였든 검사님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범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한다는 것이 저희 수사처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성윤 위원** 다음 화면 띄워 주시지요.

‘똥 저 아니에요’라는 검사가 바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개한 옥중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고 얘기했다’. 앞의 제보들을 보면 이 노트가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특활비로 술판을 벌이고 혐의도 없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겁박한 이 검사는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도 술과 연어 등 피의자 회유·협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술자리 회유와 진술 강요가 없었다고 정말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두 건의 의혹 제보에 대한 진상을 법무부가……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예, 1분 더 쓰세요.

○이성윤 위원 법무부가 명백히 조사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검찰 하면 이제 뭐가 생각납니까? 폭탄주, 성추행, 뇌물들이 연상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하다 하다 똥검사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어쩌다 검찰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국민의 시선을 전혀 고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무도하고 오만한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진상규명이 미진하면 국회에서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듣다 보니 저도 참 충격적인 일인데…… 아니, 변사 사건 이런 것은 들어 봤는데 변사건 이런 것은 처음 들어 봅니다.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공수처 검사가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수사하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일반 검찰청 검사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검사의 이런 변 사건 같은 것은 공수처가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의 입법요구안 중에 고위공직자 범죄의 범위를 좀 넓히자 하는 그런 일반적인 입법 논의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묻는 것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그 고위공직자에 검사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검사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보통 수사를 할 때 내사도 있을 수 있고 인지수사도 있을 수 있고 고소 고발에 따른 수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이성윤 위원이 공개적으로 제보한 셈인데 인지수사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일반론적으로 인지수사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할지 여부는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싶습니다.

○서영교 위원 왜 나를 뺍니까?

○위원장 정청래 뭐요?

○장경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질의하려고……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서영교 위원님, 뭐요?

○서영교 위원 아니, 제 순서였는데 왜 빼놓고 계속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청래 아,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이제 개원 초기이고 그래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 순서를 바꿀 경우에는 간사님께 얘기해 주시고 간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면 그 순서를 바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위원님 같은 경우는 순서상 다섯 번째로 되어 있는데 열여섯 번째에 하시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셨고 그래서 박지원 위원님은 질의를 안 하시고 후반부에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서영교 위원님이나 박은정 위원님은 저한테 이런 통보나 사전에 아무런 고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언 순서가 되어서 이성윤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다음 순서가 장경태 위원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발언 순서를 바꾸시려면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그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경태 위원님 질의……

○서영교 위원 아니, 잠깐…… 제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는 박은정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서영교 순서로 되어 있고요. 박지원 대표님과 전현희 위원님이 바꾸셨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장 정청래 저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서영교 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박은정 위원 그다음에 서영교 위원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사전 회의하다가 조금 늦게 들어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건태 위원이 먼저 하셨지만 제 순서가 있으니 그렇게 가 주셔야지, 저희가 순서를 바꿔 달라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에게 의견은 구해 주는 절차는 가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까 박은정 위원 질의시간인데 박은정 위원님을 제가 호명을 했고 안 계셨고 또 혹시 몰라서 보좌진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보좌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계속해야 되겠고, 법사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했고.

그래서 서영교 위원을 제가 또 불렀습니다. 안 계셨어요. 그런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지요.

○서영교 위원 바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이건태 위원님 질의를 시작한 겁니다.

○서영교 위원 저희가 바로 들어왔고요.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은데 위원장님께서 사전회의하자고 하셔서 저희 사전회의하다가……

○위원장 정청래 오후 시간 전에 사전회의하자고 제가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희가 어쨌든 사전회의하다가 바로 들어왔는데 이건태 위원님 발언 순서 하셔서 그러면 제 차례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그러면 보좌진이라도 이야기해서 조절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잘 알겠고요.

기관장, 공무원들에게 정시에 출발하니 시간을 잘 지켜 달라고 했던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일분일초를 아껴서 정시에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미안합니다,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아닙니다. 훌륭하십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상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약간의 중간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보좌진도 있고 행정실장도 있으신데 그런 정도는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벼젓이 순서가 바뀌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저는 옆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분들이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서영교 위원** 감사원 사무총장님,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서영교 위원**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인이지요?

답변하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서영교 위원**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인이시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서영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아서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을 공직자인 대통령이 알고 있다면 신고의 의무가 있는 게 맞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제가 그쪽을 잘 알지는 않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권익위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권익위가 이것은 제재할 내용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공직자인 남편은 신고할 의무가 있고, 공직자인 남편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종결 처리했어요.

권익위 위원장이 유철환이라고 대통령의 79학번 서울대 법학과 동기예요.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관련한 것을 권익위가 조사할 때 제척사유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권익위의 직무를 감사할 의무가 감사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권익위의 직무 감사, 감사원이 감사할 의무가 있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감사할 권한도 있으시고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서영교 위원 그런데 권익위 위원장이 대통령과 동기면 이 조사 저는 제척사유라고 생각하는데, 동기로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권익위 위원들 중 한 사람이 ‘뇌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자 권익위에서 ‘뇌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직무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지금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모르지만 일반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권익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요? 지금 며칠째 언론에 떠들썩한 일이고 오늘 같은 날은 법사위에 와서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하는 날이고 그렇다면 이 정도는 알고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언론에 나온 정도는 봤고요. 구체적인 것을 모른다는 것은 거기에 어떻게……

○서영교 위원 기준에 감사원이, 여기 계시지만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하면서 온 세상의 지탄을 받아 왔어요. 이번에 권익위가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잘못된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 직무감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검토하십시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지금 현재 정확한 상황을 모르지만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권익위 위원장이 조사받는 대통령의 가까운 동기라면 권익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유철환이라고 하는 권익위 위원장이 대통령의 대학교 동기동창이에요. 그러면 제척사유인데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를 조사했다고 하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지금 제척사유인지 여부를 물으시는 부분이라면……

○서영교 위원 예.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것에 대해서는 대학 동기라고 해서 바로 제척사유에 해당될 것인지는, 그것은 다시 살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님께 제가 질문할게요.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이 있는데 판사가 변호사나 아니면 그 재판을 받는 사람과 대학 동기동창이다, 같은 과 친구다 그러면 판사로서 제척사유입니까, 아닙니까? 회피사유나 기피사유가 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잘 아시지만 저희들 재배당 예규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책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원에서 그런 것을 이해충돌이라고 하고 방책을 강구하고 있고 실제로 판사가 그렇게 배당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감사원 사무총장님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서영교 위원 모르셨어요? 그 부분 감안하셔서 권익위 직무감사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국정원 문건들을 조사합니다. 국정원 문건들을 압수수색해서, 45건이나 압수수색해 보니 쌍방울이 북한 쪽과 협조해서 주가조작을 했다 이렇게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문건에. 그렇게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문건에 나와 있어서 이것은 주가조작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갔다라고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쉬쉬하고 감췄지만 국정원 문건이 다 드러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도 언론에 난 정도만 지금 확인하고 아까 오전에 박 위원님이 여쭤보실 때처럼 정밀하게 판결문을 검토하지는 않아서……

○서영교 위원 국정원 문건이 다 드러났고. 조금 전에 이성윤 위원님 질문처럼 쌍방울 사건 주임검사가 무슨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던데요,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차고 아주 답답하기 짜이 없는 노릇인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검사가 연어를 가지고 오게 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리고 이화영 의원, 검사가 있는 곳에 쌍방울 관계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연어 파티도 하고 진술 조작 회유도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뉴스타파발이지만 그 자리에 갔었던 쌍방울 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다섯 차례 정도 불려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김성태도 있었고 이화영도 있었고 검사도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녹취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조작의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초기에는 주가조작으로 가던 그 수사가 갑자기 특별한 증거도 없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어요. 야당 대표이고 대선주자였습니다. 특별한 증거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라서 잘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답변할 지위에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서영교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화영 부지사 형량을 세게 때린 그 판사에게…… 다시 이재명 지사를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특별한 증거도 없이, 조작의 흔적 그리고 거짓의 흔적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재명 대표 재판이 그 판사에게 배당이 되었어요. 이 배당될 때는 어떻게 배당이 된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동배당 시스템에 의해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가법 사건에 2개의 재판부가 있는 것으로 알……

○서영교 위원 전자 자동배당하신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자동배당한 게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알기로는 모든 법원에서 원칙적으로는 자동배당……

○서영교 위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자동배당한 게 맞냐고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우선 자동배당한 게 맞다고 답은 못 하시고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배당하는 게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이 자동배당 시스템을 도입한 취지가 어떤 개별적인 사건에 배당권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배당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토지관할 병합 이송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동배당 시스템 자체는 배당권자의 주관을 어떤 경우에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배당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라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교 위원 1심에서 증거도 없이 유죄 형식의 판단을 내린 그 판사에게 다시 배당될 수 있게 하는 게 맞냐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무리 자동배당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배당하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빼고 배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서영교 위원 신진우 판사를 빼고 배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사후적으로, 예를 들면 제척이든 기피든 회피든 아니면 이송 신청이든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맞지 처음 배당할 때부터 배당권자의 주관, 그 사건의 평가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배당의 순수성이 좀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사후적인 사정으로 감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제가 발언시간을 7분으로 했는데 추가 요청하는 것 1분은 더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답변 포함해서 7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요 중계가 되고 있으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는 목소리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박지원 위원 지금 중계가 되지도 않고, 위원장이 너무 간섭하네. 그냥 두세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지금 중계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녹화해도 그렇게 되고요.

○박지원 위원 무슨 위원장이 교장선생도 아니고 말이지요. 자율적으로 놔두지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발언시간이 7분으로 돼 있으면 7분을 지켜 주는 게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키라고는 하더라도……

○위원장 정청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지원 위원 그 말이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좀 들으세요.

김승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승원 위원 자료제출 요청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자료제출 요청해 주세요.

○김승원 위원 지금 서영교 위원님께서 법원행정처장님께, 이번에 새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회장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 전자배당이라고 하셨나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자동배당이라……

○김승원 위원 자동배당?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승원 위원 컴퓨터를 이용해서 랜덤으로 배당하는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게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있어서, 이게 전자배당인지 아니면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 숙의배당인지 아니면 협의에 의한 배당인지…… 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전자배당 전에 협의해서 하는 것을?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협의배당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숙의배당이 맞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김승원 위원 숙의배당.

전자배당을 하면 로그인 기록이 다 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럴 것이 아니라 로그인 기록이 다 남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배당이 된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김승원 위원 오늘 오전에 배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배당을 하면 전자배당은 분명히 로그인 기록이 남고 그것이 다 법원에 기록물로 보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로그인 기록이라든가 배당 결과 그것을 제가 신문, 질의할 테니까요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오후 한 5시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말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원 위원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적인 사건 배당의 원칙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어떻게 배당이 이루어졌는지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김승원 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배당을 했는지는 당연히 보존이 돼 있을 테니까

요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거고. 제가 원래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처장님께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빨리 좀 제출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국민적 관심사도 있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직접 하지 않고 위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가지고 질의응답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 할 때는 위원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운영할 테니 그 점도 양지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5시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장경태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께서 SNS에 우리 법사위를 펌하하는 글을 쓰셨습니다. 몇몇 우리 법사위원들께 ‘무자격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김기현 의원께서는 과거 차명 부동산 사건 의뢰인에게 땅을 구입해서 1800여 배의 시세차익을 얻은 바 있지 않습니까? KTX 노선을 바나나처럼 휘었다고 해서 고발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만큼 엄중히 꾸짖어 주시고 법사위의 명예를 지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마치셨습니까?

○장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 정도 하신 것으로 하고 그냥 냅두세요, 하실 말씀 하시게.

장경태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장경태 위원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천대엽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어찌 되었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여러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기소를 했습니다. 이 기소에 대해서도 쪼개기 기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재판부 재배당 등의 노력으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신변보호 조치나 권리 보장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사건에 대한 병합 말씀인가요?

○장경태 위원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병합 부분은 사실은 개별 재판부 혹은 그리고 나눠져 있다고 하면 그 재판부 사이에 서로 재판 재배당 요청 그리고 그것을 수락 등등에 따른 재판작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행정처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장경태 위원 그러면 재판부의 편의로 병합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피고 국민에 대한 이익으로 이루어져야 되나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 경험으로는 통상 피고인의 이익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 가지……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재판부의 편의를 더 고려해야 된다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재배당 부분은 피고 국민에 대한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더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일반론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습니다.

신속 재판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피고 국민의 권익을 더 존중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판부 또는 공소 측의 입장을 더 반영하고 더 존중해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개별 재판의 특성이 다종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예외로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 있어서……

○장경태 위원 일반론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질문 드린 게 아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일반론으로서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의 이익을 재판부가 상당 부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금품 수수 금지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뇌물죄와 달리 금품 수수하는 과정은 부정청탁의 존재나 대가성의 결부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 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장경태 위원 그저께 제가 처장님께도 질문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처장님의 배우자께서 고가의 화장품이나 명품백을 받았을 경우 또 인지하셨을 경우 바로 반환 조치하지 않으셨을까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그것이 국가기록물이거나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도 아닌데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까? 국가 보존의 가치가 있는…… 명품백은 국가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을 전제로 한다면 일반적인 사치품으로서의……

○장경태 위원 저는 특정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사치품으로서의 명품백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권익위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조사할 수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소추가 불가능하지 수사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학설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대면조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요청도 부탁한 겁니까,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요청을 한 것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사실상 수사로 간주해야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최순실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장경태 위원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했지요. 그런데 그때 그 대면조사 요청은 수사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행정…… 법적 권한을 묻고 있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당연히 수사의 일환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경태 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면 대통령도 대면조사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검이든 공수처든 검찰이든? 검찰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반환용 참고라고 했고 또 대통령기록물로 간주가 되고 직무관련성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권익위의 판단은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어서 권익위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과 권익위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되는데 이 입장 중에서 어떤 것을 신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대통령실과 권익위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된 데에 따른 법원행정처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적절치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쟁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님!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장경태 위원 감사원도 신고 대상 기관 맞지요, 청탁금지법에 따른?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신고받으셨어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한 사실을 인지는 하고 계시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고는 계시지요, 수수한 사실이 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장경태 위원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으십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할 시에는 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보통 감사원에서는? 많이 감사를 해 보셨잖아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감사원에서 고위공직자를 감사하실 때 고가의 선물을 받은 배우자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감사원에서?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 사실만으로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디올백은 국고에 귀속될 만한 물건이라고 보십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지금 상태에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혹시 총장님께서는 대통령실의 수석과 문자로 대화 나누시나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나누지 않습니다.

○장경태 위원 않으시지요? 사무총장께서 대통령실의 수석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한 처신이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적절합니까? 그러면 총장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대통령실 실장을 비롯한 수석과 문자로 소통하신 적 있습니까, 전화 통화나?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장경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사실관계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구체적 내용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소통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나……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있다, 없다. 제가 구체적으로 묻고 싶지 않으니까요.

있으시지요? 그러니까 수석, 대통령실과 소통하신 적 있으시다는 거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문자로 소통을 말씀하시니까, 문자로 소통한 적은 없고요.

○장경태 위원 문자든 통화든. 저 시간이 부족하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있다고 하신 거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업무와 관련된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번 주 토요일 날 낚시 갈까?’ 이런 것 질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것 질문합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저희가 인사 관련해서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장경태 위원 감사원에 이번에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출장비 세부내역, 영수증 사본과 직원 연수 목적의 해외출장보고서 제출하라고……

위원장님, 1분 더 주십시오.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제출 안 하십니까?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런 업주비나 특활비 그리고 출장비, 출장보고서 제출받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감사원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서 국회에 제출 안 하시는 겁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렇지 않고요.

○장경태 위원 왜 제출 안 하시나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 저희가 그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어느 기관이든지 기밀활동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하는 예가 없고요.

○장경태 위원 법원에서 검찰의 특활비도 공개하라고 한 것, 어떤 숙소에서 어떤 식당을 이용했다고 해서 관련 업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례 보셨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런 판례가 있는 것……

○장경태 위원 그런데 감사원이 검찰보다 더 대단한 조직입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왜 제출 안 하세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일단 그 전례도 없고요.

○장경태 위원 전례가…… 그러면 위원회 의결로 하시면 제출하실 겁니까? 법 위에 있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님?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이때까지 법사위 여러 가지 국감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한 번도 제출한 전례가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원이 특활비와 업추비를 제출 안 했던 관례가 문제인 겁니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전현희 위원 법원행정처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의 판사로 재판 업무를 하고 계실 때 만약에 그 재판 업무가 재판관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 등과 관련돼 있는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당연히 회피했을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현재 처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현재 재판할 때 만약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 소송법 취지에 따라서 해당 사유에 해당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가 됩니다.

○전현희 위원 제척이나 회피해야 되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전현희 위원 형사소송법 17조에 보면 법관이 피고인·피해자의 친족, 피고인과 관계가 있을 때는 제척해야 된다, 민사소송법 41조도 제척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에서 가족관계 혹은 당사자일 때는 제척해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원 처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법관이 재판할 권한은 헌법상 권리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헌법에서 법관의 신분을 규정했기 때문에 헌법에서 유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위원 헌법상의 권리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전현희 위원 법관은 헌법에 의해서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한다 돼 있고요.

헌법재판도 헌법상 권리이지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전현희 위원 그러면 제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 만약에 그 법률안이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에 관한 사안이라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척이나 회피해야 되겠지요,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엊그제 질문이 나온 거라서 제가 교과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아닌지.

헌법학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그 견해에서는 아마……

○전현희 위원 제가 지금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상의 권리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사들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재판할 권리도 헌법상의 권리라는 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과 당사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척하고 회피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도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이렇게 본인이나 가족에 관한 사안의 경우에는 제척이나 회피돼야 하지 않느냐 여쭙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래서 어제 위원님 어떤 의견 주신 것처럼 그리고 전 위원님 질의 주신 것처럼 내재적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저는 원칙 일반론적으로는 내재적 한계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구체적인……

○전현희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시고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입법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민소법이랑 형소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관의 가족의 경우에 제척·회피 사유를 규정한. 그러면 이 법은 위헌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위원 위헌이 아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전현희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같은 사유에 대해서 제척이나 회피를 규정하는 게 위헌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전현희 위원 대통령의 경우에도 위헌이냐고요, 법으로 규정하는 것.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럴 경우에는 거부권이 결국에는 헌법에 정해진 그 권리……

○전현희 위원 왜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했는데 이것은 답이 길어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여쭙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헌법학계……

○전현희 위원 헌법의 내재적 한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요, 거부권 행사에?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내재적 한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케이스, 사안에 있어 가지고 포섭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 가지고 그 포섭을 어디로……

○전현희 위원 재판 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위원님의 지금 그 의견대로 모든 권한에는 내재적 한계

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특정 법안이 어저께……

○전현희 위원 일단 내재적 한계는 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신다는 거지요?

지금 헌법 교과서나 헌법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자료들에 의하면, 더구나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도 의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고 법원이나 현재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이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해충돌로 제척이나 회피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권한쟁의라든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대부분의 헌법학자들과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제척과 회피를 규정해도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처장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사유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유로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그에 앞서서, 제가 발의한 법 외에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있는데 아시는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전현희 위원 권익위 소관 법입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통과가 됐던 법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 이해충돌방지법 3호에 의하면 대통령도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대통령 배우자의 특검법에 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 등에 관한 대통령의 업무에 관해서도 이해충돌로 회피 사유가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도 대통령 본인과 본인의 가족에 대한 특검법안에 대한 문제는 거부권 행사할 때 이 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실제로 그동안 수차례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법을 무시하고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이해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회피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결론은 기존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도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법은 당연히 회피해야 되고 거부권이 제한이 돼야 되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동안 이러한……

1분만 주십시오.

이러한 기존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해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서 그 업무를 적시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해충돌 시 회피해야만 한다는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처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현재 있는 기존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사례를 다룬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현희 위원 위헌이 아니고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판단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 논란이 있다라는 적은 듣지 못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전현희 위원**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확실히 정리를 한 법이 이번에 제가 제출한 대통령의 이해충돌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법을 거의 있는 그대로 확인했던 법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이 법안이 위헌이 아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일단 구체적으로 아직 사건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지원 위원** 해남·완도·진도 박지원입니다.

공수처장님,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답변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론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수사 대상이 되면 조사할 거 아니에요? 조사할 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론을 말씀드렸고, 지금 해병대 사건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어떻게 됐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이나 또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수사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을 소환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대통령……

○**박지원 위원** 수사할 수 있다? 수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일반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희권익위원회’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익히 아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공수처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수사할 생각이 있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타 기관에서 적절한 처분이 있었는지는 즉답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이 지금 우리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건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할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제 질문은 짧은데 답변을 길게 하면 내 7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그런 부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 식으로 살펴본다, 어쩐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한 사실들이 나왔으면 공수처에서는 알아볼 것 아니에요?

감사원 사무총장,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 감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현재로서는 아직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지원 위원** 살펴만 봐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아직 구체적으로……

○**박지원 위원** 아니, 감사원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살펴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감사원이 바로 서야 이 나라 공직사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것 몰라요, 아직도?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어떤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한 언론보도도 안 봤어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언론은 봤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아직도 모른다?

감사원에요, 그전에 유명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 한 사람 가지고도 감사원이 썩었다는 것은 증명됐어요. 새 감사원 사무총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감사원을 어떻게 믿어요?

감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일단은 먼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공수처장,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우즈베크에 가 있는 이종섭 장관하고 세 번 전화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지금까지 그러한 일련의 전화 내용들을,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화기록……

○**박지원 위원** 아니, 모든 사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수사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지금 수사의 요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제가 수사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통화기록을 확보했느냐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옆그제 채 상병 어머님이 얘기한 대로 내일모레 1년이 돼요. 그러면 통신사에서는 통화기록을 1년밖에 보관 안 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박지원 위원** 아니, 위원님, 나 찾지 말고 대답만 해요. 보관을 했냐, 안 했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이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쟁기고는 있는데 실제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께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공수처장이 그것도 모르고 왜 나왔어요? 말이 돼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 공수처에서 지금까지 통화기록 하나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면…… 국정원장 한 사람은 나오자마자 통화기록 확보하고 압수수색하더라고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 야권 의원들이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1년 넘으면 통화기록 다 없어지면 공수처장이 책임질 거예요?

차정현 수사기획관 오셨지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공수처 몇 부에서 해요? 4개 부가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예, 수사4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수사4부에서……

○**박지원 위원** 수사4부에서 하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예.

○**박지원 위원** 풍문에 듣기로는 이 수사4부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수처 내부의 다른 부에서는 자꾸 방해를 한다, 사실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열심히 안 한다고 안 하잖아요. 4부는 열심히 하는데 공수처 내에서 왕따를 시키고 이지메를 한다는데 그거 있느냐 이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대표적으로 저도 지금 수사기획관인데 수사4부 지원 근무 나가 있거든요.

○**박지원 위원** 오케이.

그렇다면 가령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러한 압박, 외압을 받은 적은 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별도로 외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없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예.

○**박지원 위원** 직접적인 압력 내외부에서 받지 않았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그냥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원이나 공수처가 그러면 안 돼요. 아래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고 하냐고요.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예.

○박지원 위원 현재사무처장님, 현재에서 대북전단에 대해서 판결을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지나치게 처벌을 하는 것은 과하다,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단을 보내지 마라 이런 뜻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박지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알려진 것은 현재는 표현의 자유로 전단을 보내지 마라 이렇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박지원 위원 대법원 행정처장님, 대법원에서도 2000년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전단을 보내지 마라 이렇게 판결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한 적이, 판결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북전단을 보내 가지고 오물로 돌려받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행정처장께서는 답변할 처지에 있지 않다 이렇게 빠지겠지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나 현재에서 이러한 판결을 했는데 곡해를 해 가지고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분명히 내 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박지원 위원 저는 늘 맞는 말만 해요.

현재가 맞는 말을 안 하고, 특히 공수처나 감사원은 엉망 아니에요. 이러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보통 간사님이 마지막 발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박은정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정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오후가 되어서 다시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오늘도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인권,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이고 부처의 수장인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 준법, 정의, 인권을 수호하는 상징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오늘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뜻으로 선택된 헌법기관인 국회가 정당한 의결을 통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하는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무도한 정권의 앞잡이가 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본받고 배우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법안, 개혁 입법들에 관한 토론회에도 저희가 참석 요청을 했지만 협안이 많다는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이 가장 큰 협안이 아니겠습니까? 법무부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장관과 법무부의 공직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위해 봉사하지 말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감사원 사무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지난 달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알고 계신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우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 판결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애초 이 수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이 됐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당시 감사 결과를 알려 주시겠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산자위에서 감사원에 감사요구가 됐습니다. 국회 감사요구가 됐고 요구했던 것은 원전에 대한,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왜곡이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 그랬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었다 해서 그 결과를 낸 것이 저희 감사 결과입니다.

○**박은정 위원** 이 월성원전 사건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자신의 정치를 선언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수사로 많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기까지 너무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당시 감사 결과는 당사자를 특정하지도 않은 채 문서도 없이 말로 자료제출을 요구해놓고 공무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방해로 몰아붙인 감사원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저희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자료 삭제한 공무원들이 형사벌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자료 삭제 행위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휴일 한밤중에 들어가서 자료를 삭제한 행위는, 그것은 감사원에서 징계를 받을 정도의 잘못은 충분히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 대법원 판결 읽어 보셨어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읽어 봤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 당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검

찰 수사가 모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의도를 가진 짜맞추기 감사와 수사였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잘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박은정 위원** 대법원 무죄판결이 나온 만큼 당시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현 감사위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부분은 자료 삭제 행위가 형사별 대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가 된 것이고. 저희들은 그게 주가 아니고 애초에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은 그렇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를 낸 것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또 하나의 사유가 된 자료 삭제 행위 그 자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는 엄정하게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이 없으시네요?

지금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은 그 산업부 공무원들은 부부가 암 투병을 하고 있고 몇몇은 해임까지 됐습니다.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쳐 버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감사원 감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감사는 정당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감사 계속하시겠네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에서 저희 감사 절차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현재 참여연대 등에 의해서 최 원장, 김 감사위원, 최 사무차장과 함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함께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자인 거지요.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직무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비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감사업무를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각이 달라서 내지는 어떤 오해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박은정 위원** 그것이 무슨 오해입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징계나 이런 검토할,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예.

○**박은정 위원** 이 정부 들어서 정치·표적 감사로 인해서 감사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이에 대해서 지금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도 그렇고 권익위와 감사원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할 것인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지금 감사원의 어떤 외부적인 시각, 우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돌아볼 부분은 돌아보고 하겠지만 또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저희들한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정 위원**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인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김승원 위원** 우선 법원행정처장님, 이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며칠 후에 기소된 그 사건이 다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을 한 재판부에 배당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이 2024년 4월 초에 변론이 종결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달 후인 2024년 6월 7일 선고가 됐습니다.

수사기록이 몇 페이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지금 3만 페이지이고요. 증거기록 또한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증거기록까지 몇 페이지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승원 위원** 어쨌거나 이 많은 증거기록을 검토하느라 두 달 후에 선고를 잡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사이에, 선고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피고인들, 특히 공범까지 포함해서 연어, 회덮밥 그다음에 한 번은 술까지 곁들인 그런 진술 조작 세미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폭로와 양심선언이 있었는데, 언론보도도 됐고 아마 재판장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재판장이 눈을 감아 준 격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한겨례의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부지사는 변호인 신문과정에서 판사에게 수원지검 검사실 앞에 모여서 김성태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모여서 세미나 형식의 그런 회의를 했고 쌍방울 직원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었다, 술도 한 번 마셨던 기억이 있다라고 판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다음에 이를 뒷받침하듯 쌍방울 내부자 A 씨가, 아마 임원인 것 같은데요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쌍방울 임원진들, 임원진들이라면 김성태, 방용철 등등 임원들이 모두 몇 차례에 걸쳐서 같은 공간에 모여서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공범인 안부수 아태협 회장도 함께 있었으며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과 별도 공간에서 따로 동석하기도 했고 또 쌍방울 임원급 피의자들과 담당 검사가 함께 있던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언론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이 수원지검에서 어떤 변명을 하기 위해서 낸 출정기록이 있는데요. 그 출정기록을 보니 2023년 6월 28일, 2023년 7월 3일, 2023년 7월 5일에 실제로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화영 부지사가 수원구치소에서 한꺼번에 수

원지검으로 출정을 나갔다는 기록이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부, 전 날짜에 대한 출정기록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를 지금 가지고 안 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 측이 안부수 딸에게 집을 얻어 줬다는 보도가 최근에는 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일단 판사로서는, 재판장이라면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고 다시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를 직권조사, 즉 검찰 측이나 피고인 측에 한 번 더 주장과 입증을 혹은 소명을 해 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처장님,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진행 중인 재판 사안이라서 제가 거기에 말씀드릴 위치는……

○김승원 위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난 거고요. 1심 판결 선고는 된 거고 재판 진행에 대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처장님께서 현직 판사, 재판에 임하셨을 때 변론 종결, 공판 종결 후지만 이런 사실들이 계속 폭로가 되고 나온다면 당연히 변론 종결 재개해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재판 진행,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다종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 가지고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 봅니다.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문제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지법 11재판부는 국정원 보고서 II급 비밀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공소사실에 반하는, 명백히 반하는 내용은 유죄의 증거로 채부를 안 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보고서 중에 일부 유리한 것만 증거로 채택을 했다는데, 국정원 보고서 II급 비밀 정도가 되면 사실은 대통령실 같으면 수석비서관 이상급, 국정원에서도 최고위급이 보는 건데 그것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추측성, 그런 단정을 해 버린 판결 설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중견기업으로서 건설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판사가 썼다고 하는 것은 얼마큼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불신과 유죄에 대한 예단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징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24년, 올해 2월 하순에 판사들이 바뀌었습니다. 배석판사는 바뀌었고 사실은 11재판장 신진우 판사도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야 되는데 이 재판 선고를 하겠다고 자기는 남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보도라든가요 그런 전언이 있었고요. 배석판사들은 다 바뀐 상태에서 2024년도 3월, 두 달 동안 배석판사는 공판절차 개선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접 증인의 신문을 보거나 듣지를 못하고 그냥 서류로 나타난 조서로만 재판장이 공판절차 개선할 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를 귀담아들을 정도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할 때, 지금 합의제라고 하는 것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간의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재판장은 2년 동안 자기가 직접 재판하고 끌고 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경험도 있고 그때 증인들이 이렇게 말했고 더듬기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반면 배석판사들은 2월 24일 날 발령을 받아서 직접 증인신문도 보지 못하고 기록을 통해서만, 짧은 기간 동안 3만 페이지 이상을 읽은 상태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재개를 해서 배석판사들도 문제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재판정에서 보여 줘야지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변론 종결하고 선고를 해 버린 겁니다, 그것도 독단과 편견과 오만에 가득한 그런 판결을 위해 설시를 하면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예.

○김승원 위원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것이 지금 항소심에 올라갔으면 수원고등법원으로 가겠지요. 그다음에 그 재판부가 지금 11부 그대로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 이재명 대표, 김성태 회장에 대한 기소가 새롭게 되어서 그 11재판부로 배당이 되었다는 겁니다.

공소장일본주의가 뭡니까? 처장님, 지금 이런 것이 기소가 되면 판사는 어떤 편견이라든가 또 오인이 없는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로 재판을 하라는 게 공소장일본주의이기도 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이 11부 신진우 판사가 지금 다시 이렇게 새롭게 기소된, 쪼개기 기소된 공소장에 대해서 깨끗한 상태로 백지인 상태에서 공소장일본주의, 공판중심주의를 지키면서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런저런 재판 증거들에 대해서 다 독단적인, 단정적인 예단을 보여 주고 유죄판결을 선고해 버렸는데 말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는 이것은 절망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당일 겁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 잘 이해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형사재판부 전문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특정 재판부에서 특정 유형의 사건을 갖다가 전담하는 그런 재판부 수가 1개, 2개 혹은 3개 이렇게 작은 법원에서는 좀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개선점이 있는지 계속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한 말씀만 잠깐……

처장님, 재판부 전문화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재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단 없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지키면서 공판에서 심증을 형성하는 그 대원칙이 중요합니까? 삼심제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인가는 1심을 제대로 다시 재판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원칙인지 살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도 형사재판 여러 번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가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하에 진행해 왔습니다.

○김승원 위원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짧막하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MBC 단독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장관과의 개인 휴대폰 통화를 공수처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수사에 있어서……

○위원장 정청래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주체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처장님, MBC 보도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청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MBC 보도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사에 있어서……

○위원장 정청래 다시 묻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처장님, MBC의 ‘대통령 통화 공수처는 알았다’, 사실 보도입니까, 이게 허위 보도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 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처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MBC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는 것은 공수처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허위 보도이면 허위 정보로도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 특별히 그런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치한 바 없으니까 이 보도가 사실이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같은 취지에서 저의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처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MBC 보도가 사실입니까, 허위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제가 거듭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위원님한테 답변 거부하는 것같이 보여서 죄송한데……

○박지원 위원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수사 주체로서 수사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공수처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MBC에서 ‘대통령 통화 공수처는 알았다’라고 보도했는데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허위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장 정청래 다시 묻겠습니다.

MBC의 보도가 사실입니까, 허위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께서 자꾸 물으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다음 기회에 정제된 표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공수처장님, 저는 MBC의 보도가 사실이냐, 허위 보도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공수처장으로서는 이 수사,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 수사를 성공시키는 것이 저의 소임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성공시키고 싶다고 했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어진, MBC 보도에 이어지는 보도는 ‘대통령 통화 공수처는 알았다. 압수수색했어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공하려면 압수수색을 했어야지요. 왜 안 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러한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공수처장으로서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압수수색했어야 하는데 왜 안 했습니까? 성공하고 싶다면서요, 수사가? 공수처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수사에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은 수사……

○위원장 정청래 잠깐 기다리세요.

‘압수수색했어야’라고 지적하는 MBC 보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왜 압수수색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나 이거예요. 왜 안 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위원장 정청래 안 했으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수사 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 정청래 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장님께 다 말씀드리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처장님, 제가 물을 때는 마이크 혼선이 있으니까 제가 묻고 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MBC는 ‘대통령과의 통화 공수처는 알았다. 압수수색했어야’라는 제목이에요, 기사 제목이. 그러면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했어야’라고 보도할까요? 압수수색을 안 했으니까 ‘압수수색했어야’라고 보도하는 거지요. 그러면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압수수색을 안 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장은 수사에 성공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수사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왜 압수수색을 안 했냐라고 저는 묻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에 성공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과 압수수색을 안 했다라는 것이 둘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공하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왜 압수수색을 안 했냐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화 확보 그다음에 그

에 따른 추가 강제수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사의 맥락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처장님, 자신 없으면 더 잘할 사람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게 좋습니다. 임명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압수수색을 왜 안 했냐라고 공수처장께서 담당 수사검사에게 한마디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공수처장께서 이렇게 물러서야 수사검사들이 제대로 그 울타리 안에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장이 강단 있게 이것 왜 압수수색 안 했냐, 당장 압수수색 실시해라……

법원은요 웬만한 압수수색영장은 다 발부하더라고요, 대법원에서, 볼 때. 그게 관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검사들이 압수수색영장 신청하면 대부분 다 발부하더라고요. 압수수색영장 발부 신청하면 바로 발부될 겁니다. 왜 안 해요, 수사에 성공하고 싶다면서?

국회에 와서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질책을 받으면 국회에서도 이렇게 질책을 하니 압수수색 당장 해야 되겠다 하고 명분이나 지렛대로 삼기도 합니다.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질책을 하니 우리 압수수색해야 되겠다 하고 압수수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늦기 전에.

그리고요 이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에서 수사한 모든 자료 특검에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출하면 했지 뭘 알고 있습니까?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질질 끌어 가지고 시간 놓쳤다고 변명할 소지를 남겨 놨는지 어떤지 다 특검이 알게 되어 있어요. 특검에서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보기 때문에 제가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필요하면 대통령 조사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낫겠다 하면 특검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미진하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채 상병 특검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공수처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장 정청래**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주질의는 마쳤고요, 그다음 추가질의는 간사님과 협의해서 5분간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먼저 질의를 해 볼게요.

형사재판에서 진술의 임의성을 다퉁다. 다시 말해서 진술한 사람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한 게 아니라 회유나 협박 등을 당해서 진술한 것이다라고 다투면 누가 아닌 것을 입증해야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모든 증명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검사가 그 사람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회유나 협박받지 않고 진술했습니다라는 걸 입증해야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야 되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이화영 재판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자신이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라고 진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입증했는지, 입증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아닌지 이건 꼼꼼하게 따져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차정현 공수처 수사기획관 나오셨지요?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증언대로.

지금 현재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사건 진행하고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예.

○김용민 위원 담당하고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예, 제가 주임검사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 사건이 해병대, 국방부, 대통령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가 해병대는 끝나 가고 이제 국방부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지금 수사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용민 위원 왜 얘기를 못 하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구체적인 수사 상황이고 관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자가 나온다면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잠깐 기다리시고요.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김용민 위원 조금 전에 법사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진술 안 하셨는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김용민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수사 계획과 수사 단계 이런 부분은 수사 주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용민 위원 다시!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진술 거부할 수 없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국회 증·감법 보여 드릴까요? 국회 증·감법 4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무상 비밀

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지금 법 위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만 국회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사나 재판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그런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를 해 왔던 것이지 법상 당연히 답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검토가 아니라 법에 명확하게 있다고요, 법규가. 좀 알고 답변을 하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수사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제대로 수사 시작 못 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모든 관계자들 다, 주된 관계자들은 포함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수사 순서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방금까지 그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를 못 합니까?

그리면 다른 걸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공수처에도 수사 외압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 수사하시면서 외압을 느낀 적은 있어요, 없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원래 모든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면 다양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수사팀은 좌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 말이 말속에 빼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혹시 수사 외압을 본인께서 당한다고 하면 당당하게 불법 압력을 거부하고 박정훈 대령처럼 잘못이 있다라고 폭로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물론이고요, 법과 원칙대로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수사 외압을 당하면 수사 외압에 대해서 폭로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공수처장님, 공수처장님은 만약에 이런 수사 외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김용민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도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외압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자세는 지금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 말을 믿고 싶은데 여전히 지금 공수처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지금 수사 시작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렇다 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보세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지금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소재지 어디 있는지 알고나 계세요? 자주 소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분 지금 소위 말해 잠수 탔다, 연락도 안 받고 어딘가에 숨었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

공수처 이런 사실 좀 알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만일에 그런……

○김용민 위원 수사기획관 답변하시라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오늘 제가 나온 것은 수사기획관으로서 나온 것이고 주임검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 관계자들이나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김용민 위원 국회에서는 질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할 의무도 제한 없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부터 답변하실 때는 그런 태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적 관심을 굉장히 높게 받고 있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그리고 수사 외압을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시도록 하고, 저희는 그것과 별개로 지금 공수처에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아직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공수처장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또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와 별개로 공수처는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수사 외압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또 외압이 있으면 그건 안 되겠지요.

다음은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여의도 주변을 서성일 텐데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위원님 질의 순서를 건너뛰고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박균택 위원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사건 관계자로 언급되는 분들 통화기록들은 다 확보를 모두 마치신 거겠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제가 저번에 언론에도 말씀드렸는데……

○박균택 위원 아니, 마치셨냐고 묻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저희 수사기관의 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다 했냐고 여쭙는 건데,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부분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됐는지는……

○박균택 위원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됐어요.

수사기획관 나오십시오.

처장님의 왜 저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수사기획관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예.

○박균택 위원 채 해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기록 모두 확보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균택 위원 통화기록 확보를 다 했냐고 여쭙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통화기록도 수사 자료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아직 덜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7월, 8월 지나가면 통화내역들이 다 유실되고 없어질 텐데 그것 때문에 진상규명을 못 하는 상황이 오면 본인들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현재까지 수사를 다 원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균택 위원 그러면 그 의무 다 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지금 현재 수사팀은 성실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래요, 믿겠습니다.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히 그 자료들 다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법적인, 역사적인 죄인이 안 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다음은 현재사무처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정형식 재판관님 임명 전후로 해서 현재의 보수화, 편향성 문제를 걱정하는 우려들이 많이 나왔던 것 알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늘 임명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재판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적인 책무를 다하면서 재판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야당 대표에 대한 병합됐던 사건이 분리가 돼서 재판부가 분리되고 이중으로 재판을 받으려 다녀야 했던 이 상황이 생겼던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병합되었다가 분리…… 정확히 이 사건은 제가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박근택 위원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수원지법 형사제11부의 판결이 편견과 반상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의견을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로 자신이 없어서인지 9개월 동안 기소를 못 하고 있다가 1심 판결 이후에 자신 있게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도 눈치를 봐서 기소를 못 하고 있었던 사건인데 그사이에 회유, 협박의 의혹들이라든가 국정원 문건이 새로 드러난다든가 또 안부수 증인에 대한 매수 의혹까지 검찰에게 술하게 불리한 자료들이 더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1심 판결에 힘을 얻어서 자신 있게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심 재판부의 편견과 반상식적인 판결이 바로 이런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사건이 또 그 재판부에 배당이 되어야 했는지, 그게 자동배당이었는지 숙의배당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재배당이 이루어지거나 재배당이 안 된다고 한다면 회피를 통해서라도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서 국민적인 의혹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 이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하신 것처럼 회피라든지 아니면 토지관할에 따른 병합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최근에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해서 아마 적절한 절차를 취하면 그 부분 또한 재판 사항으로 적절하게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근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였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서—당시 저는 현직 검사였습니다—기소 독점, 검찰에게 부여됐던 기소 독점이 무너진 것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소 독점 제도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 기소하지 않을 권리 를 검찰에게만 부여했던 독점적인 권한이었지요.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총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징계 무혐의가 이루어지고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총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기소했습니다. 기소하고 그 사건이 최근에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났습니다. 조직적인 검찰의 비위·비리 혐의가 공수처에 의해서 암장될 뻔했던 사건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동운 공수처장님, 지난 3년 공수처에 국민적 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성적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손준성 검사 사건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작년까지 공수처가 직접 수

사해서 기소한 사건은 3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고 5건의 구속영장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너무 초라한 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선 개입 사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수사력을 더 강화해서 공수처 본연의 권력기관 견제라는 소중한, 국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공수처에 대한 권능을 더 확실하게 수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아까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수처가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진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또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와 민간인이 얹힌 복잡한 이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가진 물리적·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수처의 권한과 기소 대상, 인력까지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수처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께서 주신 귀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기소권·수사권의 불일치 문제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패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면서 관련자에 대해서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수사 성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매우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인 노력을 국회에서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소중한 바람입니다.

○**박은정 위원**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 당시에 전국 검찰청의 검사들이 모두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성명을 했습니다. 그 감찰이 불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1심에서도 적법하다고 판단을 받았고 그 징계가 위법하다는, 징계를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서조차도 감찰은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감찰이 불법하다고 성명서를 집단적으로 발표했던 검사들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집단행위에 대해서 공수처는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범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매우 타당하다는 것이 공수처장의 입장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고위공무원 범죄의 시작이자 저희 공수처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미칠 수 있도록 입법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박은정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승원** 예.

○**박은정 위원** 지금 수사 중인 채 해병 사망사건 여쭤보겠습니다.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통화내역과 관련해서,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장관과 통화를 한 다음 날 고석 전 국민의힘 용인병 국회의원후보와 통화를 합니다. 아마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인데요. 외압의 지시 라인에 또 다른 비선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수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채 해병 사건과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서 통화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저희 공수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 이런 게 드러났어요. 저기 화면에 보시다시피요 ‘2023년에 주택 제공 윗선 지시가 있었다’ 쌍방울 그룹 윗선에서 아태평화협회장 안부수 딸에게 주택을 제공해라, 집을 줘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월에 오피스텔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4월에 안부수의 진술이 바뀝니다.

안부수는 기존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북한 측 인사를 만나 이재명 도지사 방북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고 판결이 그렇게 났어요. 재판 결과가 그렇게 끝이 났어요.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재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그렇게 났는데.

2023년 4월에 아까 말했던 그 검사, 뭐 관련한 검사, 이성윤 위원이 말씀하신 그 검사가 조작하고 이런 의혹이 계속 많습니다. 그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부수 아태평화회장 딸에게 주택이 제공되고 난 다음에 진술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었느냐 하면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서 대납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 과정에 주택이 제공돼요. 그 주택이 제공된 게 녹취로 다 나왔어요. 그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언론에서 대강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대강이 아니라 관심 있게 보셔야지요. 뉴스타파가 정말 열심히 찾아서 보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쌍방울의 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말처럼 제가 네 차례 다섯 차례 참고인으로 불려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김성태 회장이 있고 이화영 부지사가 있고 검사도 있었습니다. 다른 쌍방울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술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이런 내용도 녹취로 들으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러리라고 봅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직접 녹취로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수사 과정에 있었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립니다. 다 만천하에 드러난 거지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쌍방울 관계자하고는 일면식도 없는데 쌍방울 관계자가 이재명을 위해서 방북 대금을 대납했다? 그렇지 않지요. 국정원 문건에

그 대금을 북한에 올린 것은 주가조작 때문이다라고 하는 문건이 계속 나옵니다.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었으니 일주일에 50억씩 백화점상품권을 사서 보내 달라라고 하는 북한관계자의 발언도 있다고 국정원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제가 오늘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 형식을 빌려서 온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하는 겁니다. 저기 화면에 떠 있듯이 제가 이렇게 피켓도 만들어 왔습니다.

검찰이 이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김성태 법정 출석기록 그리고 이화영의 출정기록 모든 기록이 다 나온다면 모두가 하나로 정점으로 몰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그 출정기록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행정처장님께…… 역사에 오류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신진우 판사 또다시 배당이 되어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힐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배당이 올바른지도 보시고요. 그리고 재판도 올바른지 다시 보시고요.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공수처장님 그리고 차정현 부장검사,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오늘은 수사기획관으로 오셨다고 그랬지요, 수사기획관. 앞으로 나오시지요.

화면 다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화면에 신원식 국방부장관입니다. 현재 국방부장관이고요 당시에 국회 국힘당 국방위 간사였어요. 국방위 간사가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화 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한 번도 없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통화기록을 쳐 뽑아 보니까 신원식,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당시 전화를……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승원 예.

○서영교 위원 전화를 열일곱 번 했습니다, 열일곱 번. 열일곱 번이나 해 놓고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 기록은 다 갖고 계시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 기록은 어디서 나왔나?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가 통화기록을 사실조회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저 자료는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공수처장님, 휴대폰 암수수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저런 정도는 휴대폰 암수수색영장 공수처에서 보내면 영장 발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별적인…… 영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그건 재판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런 정도면 당연히 영장 발부합니다.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대통령이 통화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하고 세 번이나. 대통령이 통화를 했으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세 번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 시간 동안이나?

이것도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찾아낸 통화기록사실조회서입니다. 우리는 갖고 있으리라 믿고요. 그러면 이종섭 국방부장관 핸드폰 공수처에다 낸 것, 이번에 새로 개통된 것 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서 바로 원래 있던 핸드폰 앱수수색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앱수수색해야 합니다. 이시원 핸드폰도 전부 다 앱수수색해야 합니다.

수사기획관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구체적인 통화내역이나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핸드폰을 앱수수색하지 않고 어떻게 한 점 의혹 없이 할 수 있을까요? 포렌식 해야지요, 누구나 하는 포렌식. 그렇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윤석열 대통령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도 신원식 현 국방부장관도, 관계자 모두 휴대폰 전부 다 앱수수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오후 질의는 다음 이건태·이성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관장 여러분, 지금 여기에 카메라가 안 들어와서 중계방송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MBC를 비롯해서 지금 거의 모든 방송에서 생중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효율적으로 질의응답을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건태 위원** 부천시병의 이건태 위원입니다.

행정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대단히 편파적 판결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방울과 조선아태위 간에 합의서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게 2019년 1월 17일 자 합의서 또 그해 5월 12일 자 합의서가 있었고요. 또 쌍방울 내부에 IR 자료가 있습니다. IR 자료는 보통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홍보자료인데 그 세 가지 문건에 쌍방울 측과 조선아태위 간에 광물 채굴권 등 사업권을 받는 1억 달러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금으로 500만 불 또 이행보증금으로 500만 불이라는 기재가 명백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기재 내용은 스마트팜 대납금이라고 기재할 수가 없어서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처장님, 복잡한 법리나 또 아주 복잡한 증거 판단은 국민들이 법원이 판결을 하면, 검사가 기소하면 그려는 모양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나 명백한 객관적 물증 해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반대 해석을 한 겁니다.

검찰이 그렇게 기소하고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려면 이 물증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실한 근거는 1억 달러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과 이행보증금으로 준 500만 불이 계약금과 이행보증금이 아니라면 1억 달러 계약의 계약금과 이행보증금에 상응하는 다른 돈이 지급됐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돈이 일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억 달러 계약을 하면서 쌍방울 쪽은 북한 측에 지급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증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 판결을 수긍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안부수 판결문에 이렇게 기재돼 있어요, 1심 판결문에. ‘피고인은 평소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중간은 생략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밀반출한 다음 조선노동당이나 그 산하기관인 조선아태위 및 그 소속 주요 간부들에게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렇게 안부수 1심 판결문에 명백히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 불이 계약금이고 이행보증금임이 명백한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 판결문을 불신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곧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에…… 검찰이 수원지법에 기소했다는 이유로 또 그 재판부에 배당되었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게 거기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해 준 것인가, 저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강행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장님은 이게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꼭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의 취지와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성윤 위원 공수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최순실 사건 때 검찰이 최순실을 소환조사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청사 앞에 오물을 뿌리고 항의했던 시민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체포한 후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구공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들의 비위에 대해서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더라면 이 정도의 무도한 검찰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말씀 들어 보면 수사 중이니까 말씀할 수 없다 또 수사기밀이기 때문에 말씀하기 어렵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초선 의원들이 당선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가서 통화내역 등이 7월 19일 이후에, 칠월 달 되면 증거가 산실되니까, 산일되니까 증거를 바로 좀 확보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냈고 거기 앞에서 또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검찰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조금만 압수수색해도 조금만 소환조사해도 어떻게 흘리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다 언론에 공표가 됩니다. 검찰 수사는 거의 투명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공개가 됩니다. 공수처는 인권을 너무나 중요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사 상황을 일체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검찰과 달라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브리핑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저희 위원들께서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의 통화내역을 확보했느냐, 그다음에 7월 달, 8월 달 되면 보존기한이 지나는 통화내역을 확보했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일반 검찰과 달라야 됩니다. 정말 국민들이, 검찰도 그러는데 공수처도 똑같은 말씀을 할 때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또 다른 인권을 또 짓밟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곳입니다. 일반 국민을, 약자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상황을 공표하는 것은 정말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엄격히 처벌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를 처벌하고 수사하는 공수처에서 검찰과 똑같은 행태를 보일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또 다른 검찰이구나’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국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점에 대해서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반드시 공보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위원들께서 끝까지 물어볼 겁니다. 그 후에 국민들에게, 만약에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라면 공수처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박은정 위원님 통해서 공수처 인원 증원, 기관 확대, 죄명 들려 줘라, 수사 대상 들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정말 공수처 수사 대상을 들리라고 하기 전에 현재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 주시고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적지만, 인원이 적지만 저희가 이렇게 수사해 내겠습니다를 보여 주십시오. 그래야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공수처, 과거에 1990년대 말 고비처부터 시작해서 20년간 전 국민의 염원이 담긴 기관입니다. 공수처 출범한 지가 4년이 됐습니다. 공수처가 뭘 보여 줬습니까, 지금까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선언해 주시고 긴 것은, 확실히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공수처가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무도한 검찰도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검찰이 안 변할 때 공수처가 변하게 하는 메기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장님 명심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에도 구속된 피의자의 소환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저희들…… 구속기간에 관한 말씀입니까?

○**이성윤 위원** 구속된 피의자를 다른 사건으로 불러서 조사할 때 몇 회 이상 조사하지 말라, 조사한다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수용자 소환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묻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검찰에는 수용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일정 범위의 수용자, 구속된 사람을……

1분만 더 주십시오.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록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경기부지사 관련해서 검찰이, 제가 변호인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속된 피의자를 무려 217일 소환하고 그중에 70여 일을 조사하고 조서 작성은 극히 일부만 작성했다고 그립니다.

과거에 일제 식민지나 일제 강점기나 군사정권 때는 사람을 때리는 것 이런 게 문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사람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형법에는 독직폭행·가혹행위죄는 처벌되지가 않고 있지요. 사례가 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속된 피의자를 수도 없이 부르고 또 술, 회유 이런 과정이 통틀어 보면 피의자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유하고 협박하는 일이 많이 생긴 겁니다, 때리지는 않지만. 이런 사례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수처 처장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특별히 유념하라는 위원님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저희들 수사에 있어서 적법절차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검찰이 요구하는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거의 그냥 논스톱으로 다 발부하고 있더라고요.

처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나 또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 전체적인 법관들이 다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압수수색영장이 특히 개인적인 기본권에 굉장히 중요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또 피고인의 다른 부수적인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위원장 정청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과 기각률 혹시 알고 계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조사를 한번 다음에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거의 다 발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고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통화기록 이런 것도요 거의 다 해 주더라고요. 뭐,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을 너무 남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하여튼 검찰이 압수수색영장만 하면 그냥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거의 논스톱으로, 그냥 거의 100% 발부하던데 저는 그것도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제가 지금 법원행정처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이종섭 장관 압수수색영장 하면 법원에서 다 발부해 줄 겁니다. 발부 안 될까 봐 지금 압수수색영장 신청 안 하는 겁니까?

거의 다 해 주게 돼 있어요. 거의 해 주고 있고. 쉬워요. 그거 왜 안 합니까? 신청해 보세요. 금방 해 줘요.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압수수색의 대마왕이 윤석열 검사였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기도 해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은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국정철학일 거예요. 영장, 압수수색 철학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겁니다, 압수수색영장 신청하고 발부하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 대통령, 국방부장관 통화기록 내역 압수수색영장 신청하고 법원에서 발부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기뻐할 겁니다.

대통령 국정철학하고 잘 맞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영장 신청하시고 발부받고 통화기록 확보해서 대통령,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철학에 맞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일이라니까요. 대통령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좋아하는 일 하세요,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 거.

처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장님 귀한 말씀 유념해서 수사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맞아요. 제가 귀한 말씀 드린 겁니다.

대통령도 싫어하지 않을 일이라니까요.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고 압수수색영장 자꾸 신청하고, 압수수색영장 신청받아서 대통령, 국방부장관 통화기록 확보해서 수사하고 대통령도 소환하고. 대통령이 좋아할 일이라니까요. 본인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내용들이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먼저 하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장경태 위원 제가 감사원에 5년간 직원 연수 목적의 해외출장보고서 일체와 2021년부터 24년 5월까지 감사원장·위원·사무총장이 사용한 업추비, 특활비 등에 대한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출장비 견별 세부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관례가 없다고만 주장하신 것을 방금 들었을 텐데 관례를 깨는, 국회법을 적용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오늘 회의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회의가 아니고 저희가 출석요구를 의결했고 또 자료제출도 의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 제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할 자료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장경태 위원 감사원 사무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추비를 못 낼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업추비를 못 낼 사정이 있습니까? 해외출장보고서, 출장 증빙자료가 감사와 관련 있습니까? 이미 감사 끝난 사건 아닙니까? 감사가 지난 출장과 업추비에 대해서 왜 못 주시지요? 특활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들 중에서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제출하고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출이 좀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요, 제출이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다른 더 큰, 더 대단한 자료들도 다 제출합니다. 감사원이 얼마나 대단한 기관이라고 제출 안 합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제출할 자료들을 선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정경주 감사원사무처 전 감사단장님 아시지요? 정경주 이분은 지금 행정안전2과장 가 계시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정경주 과장이요?

○장경태 위원 예.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장경태 위원 이분이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하셨던 분 맞습니까?

과거 2023년 7월에 그때 1사무차장 하셨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장경태 위원 그때 감사원이 7월 31일과 9월 26일 날 방통위와 방문진 감사와 관련된 질문지를 방통위로 보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질문지 기억하십니까, 7월 31일, 9월 26일부로 보냈던 이 질문지?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장경태 위원 보신 적은 없으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모릅니다.

○장경태 위원 사무차장 시절에 감사원에서 보내셨는데……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제 소관이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소관이 아니셨군요.

감사원 사무 처리규칙 27조에 따르면 감사 대상자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항목만 질문서에 넣을 수 있는데요. 이 질문서는 감사 대상에게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맞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 것은 감사…… 우리가 필요한 데다가 질문서를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방문진에 대한 감사,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감사 내용을 거의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이것을 방통위에 질문지 형식을 빌려서 감사 내용을 유출합니다, 사실상.

하나하나 읽어 드릴까요?

공공기록물에 대한…… ‘몇 월 며칠 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의혹이 접수됨에 따라 감사원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등등 해서 이것 하나하나가 27페이지, 48페이지 분량입니다. 이것 감사원법 위반 아닙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필요해서 질문서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경태 위원 질문서 이게 일상적인…… 감사원이 질문서를 이렇게 두껍게, 해당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보낸다고요? 만약에 그 사실관계가 다르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총장님? 이것 나중에 청문회나 국정조사 할 텐데.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아마 필요해서 질문서를 보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경태 위원 이렇게 구체적인 감사 내용을 다 적시해서요, 설명까지? 감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 안 합니까?

그래서 방통위는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감사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질문서를 쓰려면 제대로 똑바로 써야지, 감사원은 문서 작성도 못합니까? 7월 31일 자로 보낸 문서의 5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 ‘2023년 8월 현재까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이것은 문서 작성할 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원의 직원들이 보고서 쓰면서 7월인지 8월인지 혼동한 겁니까, 다섯 번에 걸쳐서?

답변하시겠어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 것은 제가……

○장경태 위원 이 질문서 본 적 없으십니까? 작년 국감에서도 감사원과 방통위 국감에서 항상 나왔던 내용입니다. 파악이 안 되셨나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질문서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 까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8월 21일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고 9월 11일에 법원에서 해임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립니다. 2주 뒤에 감사원은 더 두껍게, 더 많은 분량으로 9월 26일에 질문서를 발송합니다. 그런데 1페이지를 보면 ‘귀 기관이 방문진 검사·감독하는 데 대한 질문입니다’라고 합니다.

방통위의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은 한 달 전, 8월 17일에 종결됐는데 이미 종결된 검사·감독에 대해서 감사원이 왜 굳이 또 추가로 질문합니까? 그것도 모르시나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그 질문서 발부된……

○장경태 위원 그러면 확인하셔서 저의 추가질의 때 답변하실까요, 오늘 중에?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내용 아니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이 감사원 질문서를 보면 정말 역대급 질문서입니다. 모든 감사 내용이 다 들어가고…… 1분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래 예.

○장경태 위원 구체적인 사건과 사례를 나열했고요. 법률적 판단도 명시하고 있고 또 조사인의 진술 내용과 인적사항까지 다 질문서의 형식을 빌려서, 사실상 감사보고서 초안을 질문서 형식을 빌려서 방통위에 제공하고 그걸 방통위가 법원에 제출합니다.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이고 사무감사 규칙 위반이고 그리고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입니다.

행정조사와 관련된 것은 어떻습니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권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고 처벌보다는 법령 준수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원래 조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방통위와 짹짜꿍해서 법원이 판결 내기 전 혹은 방통위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하기 전 질문서를 방통위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그대로 그걸 법원에 제출해서 본인들의 소송에 이용해요, 감사원의 이 조사 내용을.

이것 설명하시겠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질문서……

○장경태 위원 못 하시지요? 질문서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지금 질문서 내용……

○장경태 위원 권태선, 김윤섭, 김재성의 공공기록물법 위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다 적시돼 있다니까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돼 있는지. 이걸 모르신다고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아니요, 그런 내용이 있었다 해서 그게……

○장경태 위원 아니, 작년……

보충질의 때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질문서 꼭 확인하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철래 다음에 더 질의하시고요.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현희 위원 먼저 자료 요구부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래 그렇게 하세요.

○전현희 위원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혹시 사무총장께서 앉은뱅이 감사라는 용어 아십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전현희 위원 감사원 내부에서는 대부분의 감사원 직원들이 알고 있는, 공유하는 은어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에 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은뱅이 감사를 하면 감사원 직원들이 실지감사를 많이 가는데 실지감사에 가서 출장비를 부풀려서 엄청난, 사실상 비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제보입니다.

그동안 감사원의 출장비 내역을 보면 지금 한 해 실지감사나 출장비에 50억 원 가까운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는데, 감사원이 과연 이런 출장비나 특수활동비, 업추비 또 여러 가지 해외 출장 비용 이런 것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것은 국회에서 감사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결산소위원회장을 맡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년간의 모든 자료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요.

만약에 감사원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사용 내역과 영수증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제대로 사용했는지 정당성과 정확성을 입증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에 감사원의 이와 관련된 비용을 모두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료 준비해서 5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권익위원장 시절에 이러한 내용을 저의 동의 없이……

○위원장 정청래 저한테 요구하세요, 자료제출은.

○전현희 위원 예, 위원장님께 요구드리겠습니다.

권익위 때 감사원이 이 모든 것을 저의 아무런 동의 없이 다 확보를 해서 샅샅이 조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이러한 자료 내역에 대해서 감사원이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감사원은 제출하지 못할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여당 의원으로서 문화부장관, 국장까지 업무추진비 내역 다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관례가 아닙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다 받아 냈어요. 또 받아 내는 방법도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올면서 제출하는 사람이 있고 웃으면서 제출하는 사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전현희 위원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판사님께서 재판을 하시고 그리고 판결문을 작성하시는 데 거기에 판사의 서명이 들어 가지 않으면 그 판결문은 무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무효입니다.

○전현희 위원 만약에 직원이 서명이 없는 판사의 판결문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판결되었다라고 하면 그 직원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전현희 위원 어떤 죄가 될까요? 직원이 판사의 서명 없는 판결문을 판결문이다 하고 공개를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 무슨 죄가 성립하느냐는 거지요. 전산 조작이나 공문서 위조나 이런 죄가 성립하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검토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전현희 위원 그렇게 성립을 하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전현희 위원** 만약에 검사가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고 공소장과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판사의 판결문을 인정하지 않고 검사의 공소장을 판결문이라고 게재하면 그것은 무슨 죄가 성립할까요? 그것 판결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내용이라면 당연히 판결문이 될 수는 없을 테고요.

○**전현희 위원** 판결문이 될 수 없지요? 그리고 그 검사에도 죄가 성립을 하겠지요,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적절치 않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위원** (영상자료 상영)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로 구성이 되고 이 감사위원회는 검사 격인 감사원사무처가 조사를 한 감사 내용을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판사와 같은 감사위원회 그리고 공소제기를 하는 감사원사무처 이렇게 이중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최종적인 최고 의결기구는 감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만이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맞습니다.

○**전현희 위원** 감사원장이 당시 권익위 감사에 대해서 판사 격에 해당되는 감사위원들의 열람 결재를 거치지 않고 전산에 올린 전산 조작 시인을 당시에 국회에서 했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래서 시인한 그 기사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렇지 않습니다.

○**전현희 위원** 감사원장이 시인 안 했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보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가 감사를 받았을 때 내부 제보에 의해서 13건의 감사 사유에 대해서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받았고 13건의 감사 사유에 대해서 감사원사무처가 대부분 협의가 있다는 식으로 일종의 기소, 공소 제기를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모든 협의가 무협의,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원사무처에서 여기에 불복하고 동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전산에서 이것을 조작해서……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렇지 않습니다.

○**전현희 위원** 전산에 그 내용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라고 하고……

○**위원장 정청래** 전현희 위원님, 잠깐만 발언 멈춰 주시고요.

시간 멈춰 주세요.

사무총장님!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위원장 정청래** 왜 위원이 발언하는 시간에 끼어들고 발언합니까? 왜 그래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할 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게 기회가 없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정확한 사실관계가 틀릴 때는 제가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화면에서 본인이 했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왜 사실이 아닙니까?

○위원장 정청래 사무총장!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전현희 위원 본인이 ‘예, 제가 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백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정청래 전현희 위원님, 잠깐만 계시고요. 제가 지금 질책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좀 유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계속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계속 끼어들 겁니까, 안 끼어들 겁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뭘 유의합니까?

지난 21대 법사위 버릇 고치세요. 지금은 22대 법사위예요. 국회의원은 총선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국민들한테,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달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의 녹을 먹을 사람들이 국민의 욕을 먹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또 끼어드네? 끼어들지 마세요.

답변하세요. 또 끼어들 겁니까?

○전현희 위원 제가 질문을 아직 안 마쳤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고 있어요.

전현희 위원이 또 질의할 텐데 끼어들지 마십시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질의 계속하시지요.

○전현희 위원 화면에서 최달영 사무총장이 당시에 기조실장의 신분으로서 감사위원들이 의결을 하지 않고 열람을 하지 않아서 감사보고서가 공개가 되지 않자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전산 조작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 조작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그 당시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에 의해서 공수처에 고발 조치가 되었고 공수처에서 현재 그것 수사를 하고 당시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을 압수수색을 해서 전산 조작이 있었는지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예.

○전현희 위원 아까 사무총장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오해가 있었다, 행정적인 문제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수처에서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로서 지금 최달영 사무총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산 조작 죄라든지 공문서 위조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아까 법원행정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판사의 서명 없는 판결문은 무효이고 범죄를 형성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 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전현희 위원 지금 현재 수사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지금 수사에 착수하였고, 그 부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수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철저히 수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지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박지원 위원 우리가 21일 청문회를 개최하고 증인으로 신청한 국방부장관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나간다고 합니다. 권의위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할 때 대통령은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런종섭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음박질 잘하고 해외 잘 나가는 사람이 전부 국방장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출국 정지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위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웃으면서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내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좀 화가 났어요. 왜 공수처장이 웃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빠져나가세요?

다시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크에 가 있는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자기 개인 폰으로 세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사실은 인정하고 위법은 없다 했어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21일 증인으로 채택된 신원식 장관도 거의 20여 번에 걸쳐서 이종섭 전 장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런 자료가 필요한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통화기록을 확보했느냐 이 질문을 그렇게 위원들이 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압수수색했어요? 통화기록 확보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모든 관련자에 대해서 그 부분……

○박지원 위원 알았어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돼서, 그때는 이미 아무리 빨라도 칠팔월이 되는데 기록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것이지요.

공수처장, 책임질 수 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놓치지 않고 또 수사 책임자로서 책임 있게 그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압수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돼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제가 그런 일반론을 말씀드렸고 위원님의 뜻이 허공에 날리지 않도록 지금 열심히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지원 위원** 또 열심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은 압수수색을 해서 통화기록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감사원 사무총장,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원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 그 한 사람이 망쳐 버린 감사원이 재발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현 사무총장도 유병호 라인이라는 게 맞아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렇지 않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 않지요? 잘하세요.

지금 감사원이 얼마나, 저에게도 어떻게 했는가…… 저는 제 문제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잘하세요. 유병호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감사원 망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법원행정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재판은 증거재판하고 공판중심주의로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지원 위원** 같은 수원지법에서 안부수 대북송금 사건, 대북 관계로 3년 반의 징역을 받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랬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지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는 같은 수원지법 다른 판사로부터 9년 6개월을, 또 특히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2000년 8·15, 6·15 정상회담 후 두 달 있다가 평양을 갔습니다.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가지고 시드니 하계올림픽에 남북 공동 입장문을 하자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장웅 IOC 위원을 불러 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김운용 대한체육회장 그분에게, IOC 위원이기 때문에 장웅 IOC 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동시 입장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북한의 유니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장웅 IOC 위원, 북한에 있는 분이 그러한 돈을 받았다고 서면진술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저도 잘 압니다.

○**위원장 정청래** 1분 더 쓰시겠습니까?

○**박지원 위원** 예.

김영철 부장, 김성혜 이런 분들의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전언 하나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은 저는 항소심에서 싸워 볼 만하다. 그러나 그 재판부에서 똑같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는다고 하면 선입관이 있잖아요. 그분은 그러한 것을 인정해서 이미 이화영 부지

사에게 유죄판결을 했다고 하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면 증거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피고인 입장에서 해석해 주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지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 이재명 피고인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거나 또는 수원지법보다는 지금 현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겠다 하면 그러한 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재판에 관한 사항이지만 다만 말씀하신……

○박지원 위원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수원지법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대법관으로서 제가 말하는 법리 해석이 또는 일반적인 해석이 틀렸느냐 맞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하신 취지와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걸 좀 잘해 주시라 이것이에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승원 위원 조금 전에 박지원 위원님께서 참 마땅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판사가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는 사유가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승원 위원 형사소송법 17조, 그중에 이 수원지법 배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호가 7호입니다, 7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 그다음에 ‘또는’이라고 해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처장님도 법관이시니까 당연히 암기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11부가 지난주에 선고한 판결의 사실과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기소돼서 11부에 배당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승원 위원 11부가 지난주에 선고한 사실의 주된 내용은 이화영 부지사라든가 쌍방울 측에서 2019년 1월부터 4월 사이 또 2019년 7월, 8월경부터 2020년 1월까지 5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외국환, 달러를 갖다가 북한 측에 보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승원 위원 이것에 대한 유죄 판단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고요. 일부 환치기 수법은 무죄였지만 어쨌건 유죄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롭게 기소된 것, 제삼자뇌물죄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승원 위원 기초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똑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정확히……

○김승원 위원 아니, 정확히가 아니라 정확히 똑같습니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500만 달러,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으로 쌍방울이 대납했다’ 그다음에 ‘2019년 하반기부터 300만 달러, 경기도지사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대납했다’. 똑같지 않습니까? 적용 법조만 다른 겁니다. 앞에 것은 외국환거래법이고 지금 새롭게 기소된 것은 제삼자뇌물죄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19조…… 아까 말씀한 제척사유, 신진우 판사가 그 사건에 관한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 아마 혹시라도 제척이나 회피 관련한 쟁송이……

○김승원 위원 처장님, 이것은 즉답을 해 주셔야지요, 재판 업무에 30년 이상 종사하셨고 법원의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사건에 기초되는 심리에 신진우 판사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지금 판단이 안 서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것……

○김승원 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승원 위원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똑같지 않습니까. 적용 법조만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판사로 하여금 이 새로운 기소권 재판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척사유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전심 관여 금지하게 하고 기초되는 사실 조사, 심리에 관여한 재판 판사를 제척하게 한 것의 그 취지가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선입관 배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승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선입관 가지고 재판하지 말고 새롭게 선입관 없는 깨끗한 판사가 와서 공판정에서 간결한 공소장부터 시작해서 심리를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어느 누가 봐도 이미 유죄의 예단을 가진 판사가 이 재판을 갖다가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자배당 이유만으로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최소한 신속히 이것 재배당돼야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게요.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검찰이 2년 동안 이화영 부지사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기도지사 시절, 이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압수수색 그다음에 검찰수사관이 23일 동안 김동연 지사 시절에 경기도청에 상주하면서 예전 기록들 다 탈탈 털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화영 부지사 기소할 때 아니면 재판 중일 때 같이 기소를 해서 병합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검찰 기소하지 않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유죄선고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 똑같은 사실관계를 적용 법조를 추가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이것 쪼개기 기소 아닙니까? 공소권 남용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제지를 법원이 해 주셔야 되지요,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기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아시다시피 판례로 공소권 남용에 관한 그런 판단이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 사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법송금, 제삼자 뇌물 사건을 똑 빼어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할 때 성남FC 사건이라든가 다른 성남 사건도 다 모아다가 중앙법원에 구속시킬……

1분만 더 주십시오.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른 공범 이화영, 김성태, 쌍방울 사람들은 다 수원지검,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만 톡 빼어서 수원 것 모으고 성남 것 모으고 서울중앙에 있던 것까지 다 뜰뜰 말아서 중앙지법에다가 청구를 한 겁니다.

기각이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중앙에다 두고, 중앙지법에다 기소를 하고 이 건만 다시 수원지검으로 갖고 와서 아까 말씀드린 조작 수사, 회유 수사, 협박 수사하면서 이화영 진술 바꾸게 하고…… 아까 누구지요? 안부수 딸한테 주택 제공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런 걸 갖다가 유죄가 나오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수원지법에 또 기소를 한 겁니다.

이것 중앙지검으로 분리해서 올려 보냈으면 거기서 기소하고 재판하게 해야지 이걸 또 똑 빼어다가 다시 수원지법으로 와서 여기서 기소를 한다는 게 그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까?

대답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보충질의가 끝났는데요. 저도 짧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보통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하는 이유는 수사를 하면 기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자기가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못 하게 되면 자기 수사가 잘못됐다고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한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기소를 하려고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기소된 사건은 어떻게든 유죄가 나오면 그 검사한테는 좋은 일 아닙니까? 무죄가 나오면 본인이 수사를 잘못했고 무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적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수사, 검사를 분리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타당한 말이지요?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검사는 기소만 합니다. 수사 개시부터 수사 종결까지 영국은 경찰이 다 해요. 경찰이 과도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영국은 모든 수사는 경찰이 다 합니다. 검사는 기소만 합니다. 경찰이 수사해 온 것을 가지고 기소할 거냐 말 거냐, 기소거리가 되냐 마느냐 또 기소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빼고 기소를 하냐 넣어서 기소를 하냐 이것을 하거든요.

원래 수사, 기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상식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도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재판을 한 사람이 그것과 유사한 재판을 했을 때 무죄를 때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리면 본인이 이미 유죄라고 재판한 사건과 전혀 정반대의 판결을 할 수도 있는데 판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판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일말의 의심받을 소지를 없애고 재판을 해야 그 재판이 나중에 의심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이었다라고 법원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나는 하겠다 하더라도 친족 간에 관련된 재판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재판을 잘못할 것 같으니까, 아전인수 격으로 할 거니까, 팔이 안으로 굽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제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지금 한두 사람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화영 재판에서, 본인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했다고 하지만 그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그 증거도 취사선택해서 유죄판결을 내리는 데 끼워 맞추기 위한 그런 증거만 활용했다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정원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했다라고 지금 비판받고 있는데, 비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같은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한다면 더더욱 유죄판결을 하려고 하는 굳은 결심과 각오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굳이 왜 그 판사한테 그 판결을 맡겨야 되느냐라는 것이 법률 이전에 상식이에요.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위해서도 이것은 분리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을 위원들이 계속 지금 발언하고 주장하는데 법원행정처장님은 그냥 알고서도 그러는지 모르면서도 그러는지 이 국민적 상식선을 가지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 법원행정처장님도 그냥 그렇게 한통속인가, 이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분들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그런데 국민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변하시겠습니까. 아, 우리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사들이 신인가요? 사람이잖아요. 신도 오류가 있어요. 사람은 한계와 오류를 갖고 있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판도 3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원을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진짜 법원에서 심사숙고할 사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런 말씀이 매우 부적절한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바른 재판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의 취지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라고 독일의 법학자 엘리네크라는 분이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 그렇게, 법 법 법 이렇게 하는데 저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도덕과 양심에도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5분 질의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1분은 제가 안 드릴 테니까 4분 59초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에 앞서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제 자리에서 잘 안 보입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그러시지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2003년에 아주 정의롭고 수사 잘하는 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 윤석열 검사가 광주 광산구청장 부인 이 아무개 씨가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혹시 이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옛날 기사니까 잘 모르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 정의롭고 수사 잘하던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는데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짧게 답변해 보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답변하기 불편해서 그런 겁니까?

답변하기가 불편하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제가 답변하기 부적절한 사항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부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답변하셔야 되는 사안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물론 권익위 문제기는 하지만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해서도 감사 권한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2012년 독일의 불프 대통령이 취임 19개월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한 이유가 이래요, 보니까. 아내 자동차 리스할 때 0.5%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답니다. 그리고 자동차 구입 당시에 딜리가 대통령의 아들에게 약 5만 원 상당의 장난감 자동차를 선물해서, 사은품으로 줘서 이게 문제가 돼서 대통령을 사임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배우자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수수받았고 그리고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고 그 인사청탁받은 것에서 실제 위법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국민적 관심사인데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권익위에서 종결처분했습니다.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비교 많이 되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익위에서 종결처분한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용민 위원** 파악 제대로 안 하고 나오셨으면 오늘 이 업무보고를 정말 무성의하게 나오신 것이에요. 알고 나오셔야 되고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준비 안 하실 거면 그 증언대에 서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앞으로 하여튼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이것 한번 읽어 볼게요.

‘제12조 1항,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처벌조항이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듭니까? 형사사법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 보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용민 위원** 적절한 법으로 보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공수처장님 어떻게 보이세요, 이 법이?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용민 위원** 혹시 이 법이 어느 법에 있는지 아세요, 이 조문이? 알고 계시지요? 이게 국가보안법에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서, 수많은 조작과 날조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분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당이 이와 유사한……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검사들이 사건 조작한다는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조작하는 수사기관, 수사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제 반박은 두 분의 답변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편 공수처장님, 지금 사건 조작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직권남용은 워낙 인정범위가 좁으니까 이런 법에 대한 도입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는 제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짧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독일 통일 과정에 있어서 동독과 서독에 범왜곡죄가 있는 것을 보고 공통된, 구성요건이 굉장히 비슷한 조항이 있는 것을 보고 좀 놀라고 그 다음에 독일 통일 이후 사법 청산 과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이 정확하게 4분 59초에 발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다고요?

○**박균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저를 보고 하세요.

○**박균택 위원** 법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검찰이 쌍방울 송금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이화영을 상대로 회유·협박했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법사위 때 법무부에 열아홉 가지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하지 않은 것만 다섯 가지를 제출하고 의미 있는 것들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작 사건의 진상을 은폐할 의도가 아니라면 이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료 제출하도록 다시 한번 요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무부는 19개 자료제출해 달라고 그러는데 5개 하고 14개를 안 했다는 건데……

○**박균택 위원** 대표적인 것이 김성태·이화영·방용철에 대한 출정기록, 조사 횟수 그리고 세 사람의 구치소 출발시간, 귀소시간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참 법무부가 한심한 것이요, 저도 예전에 감옥살이해 봐서 알고 있는데 검찰에 검취하러 나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재판받으려 출정 가는 것, 그 기록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걸 안 냅니까? 숨기려는 자가 범인인 거지요. 그것 왜 안 내지요?

여기 법무부 관계자 나와 있습니까?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장관만 안 나온 게 아니라 관계자도 안 나와 있네요. 이 방송 보시고 있을 테니까 내세요, 법무부.

아니, 출정기록 그걸 못 낸다. 출정기록 안에 무슨 금송아지가 숨어 있습니까? 그걸 왜 안 내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짧게 의사진행발언을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1분 하세요.

○**김용민 위원**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자료 불제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지만 제재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국회의 중언·감정법 10조에 따라서 검증, 현장에 나가서 검증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 법사위의 의결로 출정기록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저희 간사님과

협의할 테니까 필요하면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검찰도 합법을 가장해서 모든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도 삼백 번, 사백 번하고 또 법원에서도 법원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이용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도, 우리 법사위도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필요하면 제가 직접 가서 강제구인해 오고, 필요하면 현장 검증하고 국회에서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이 헌법에서 명하고 있는 헌법정신 삼권분립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출국금지도 꼭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출국금지요?

그것은 법무부 권한입니다.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쫓아가서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아까 감사원 사무총장에게도 이야기했었는데요 김건희,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고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을 받고…… 이런 명품백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 부인이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그래요. 법적으로 가요. 그러면 대통령이 법으로 신고의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법 위반 아닙니까? 대통령 부인이 나와서 정말 잘못했다고 해야 해요. 그런데 얼굴을 보이지를 않아요. 얼굴을 보이지 않고 아주 국민을 조롱하듯이 에코백을 들고 순방을 갔어요. 에코백을 들고 다닌다면 자랑하며 순방을 갔어요, 명품백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총선에 대통령의 여당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창피한 줄을 모르고, 국힘당은 그래서 대패했는데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의 나 몰라라 내 마누라만 보호하는 그 모습 때문에 참패해 놓고 참패했는지도 모르고 이 국회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생떼를 쓰고 있어요. 생떼 써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또 그것을 믿고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출석을 안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가 2003년에 이렇게 합니다. 광주지검 특수부 윤석열 검사는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서 광산구청장 부인이 뇌물을 받았으니 그 광산구청장 부인을 구속해 버립니다. 자신이 검사일 때는 공직자의 부인이 돈 받았다고 구속시켜 놓고 자기가 대통령 돼서는 자기 부인이 뇌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그리고 권익위는 ‘충성’ ‘충성’ 하면서 종결시켜 주고, 감사원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직무감사를 하지 않고……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아들을 군에 보냈어요. 그런데 아들이 실종된 사람 찾는다며 물속에 들어갔다가 휩쓸려 떠났어요. 그런데 사단장이라는 인간이 지시를 했어요,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라고.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구나’라며 카톡을 날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수사를 하다가 그 사단장이 문제가 있다며, 사단장이하 8명이 문제가 있다고 경찰로 회부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부하려고 했던 수사단장이 항명수괴죄가 돼요. 대한민국, 이게 올바른 대한민국입니까? 어떻게 수사단장을 항명수괴죄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박정훈 대령에게 ‘너 항명수괴야’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국민이 설마설마했습니다. 설마 윤석열일까? 설마 대통령일까? 설마설마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아니라고 하고 있는 그 시점에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전화한 게 나왔어요, 그것도 세 번이나. 그러면서 박정훈은 항명수괴죄가 됐어요. 왜 대통령은 임성근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자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할까요?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그 전화기록 갖고 있느냐고 물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압수수색하냐고 물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뭐가 무서워서 공수처가, 뭐가 무서워서 감사원이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못한단 말입니까? 저는 대통령이 무릎 끓고 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대통령의 모든 주변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출국금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 공수처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 5월 27일 날 제가 제의해서 저희 민주당의 22대 당선자 171명 명의로 통신사실확인자료 꼭 확보해 달라고 수사촉구서를 공수처에 접수했습니다.

혹시 처장님, 그 수사촉구서 보셨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그런 부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수사촉구서 보셨냐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접수된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뒤에 계신 수사기획관님, 그 수사촉구서 보셨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차정현** 예, 관련해서 기록에도 첨부했습니다.

○**이건태 위원** 처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이 사건의 매우 핵심적인 증거인데 당연히 공수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제가 언론에 나서서 먼저 그런 부분에 의지를 비쳤습니다.

○**이건태 위원** 동의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이건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희 민주당의 국회의원 171명이 수사촉구서까지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가 안 됐다면 공수처가 직무유기의 책임을 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의 이 법리 판단에도 동의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제가 직무유기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

○이건태 위원 제가 묻는 것에 대답해 보세요.

직무유기가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고의로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고의로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이건태 위원 이 수사 외압 사건의 수사 대상의 핵심이, 대통령이 임성근 1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했는지 이것이 핵심 수사 대상 혐의 사실이 맞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수사 대상에 대해서 저희 지금 여러 각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처장님, 처장님의 수사기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수사 대상이 뭔지는 밝혀 주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임성근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고 외압을 가했는지, 그것이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묻습니다.

수사 대상 맞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수사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가했는지가 수사 대상이라면 대통령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공수처의 의무사항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앞서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주신 질문도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빠짐 없이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건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사 대상이 대통령의 외압이고 그러면 대통령의 통신사실을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수처가 대통령의 통신사실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공수처의 직무유기가 논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수사에 필요한데도 고의적으로 그런 부분을 빼뜨린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유념하고 저는 관련자들의 모든 통신사실을,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왜 임성근 사단장을 이렇게나 두둔하는지 그 이유가 온 국민은 궁금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그것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들어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수사범위에 있어서는 한정하지 않고 저희들은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더 깊이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수사 대상에 한정을 두지 마시고 확실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가 책임져야 될 겁니다, 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유념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경태 위원 처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화내역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신 적 있어요? 수사 증거를 확보했냐, 안 했냐 말고요. 그냥 법원에 압수수색영장 신청하신 적 있으세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부분인데……

○ 장경태 위원 아직까지 안 하셨다고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 장경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장 신청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요, 지금까지?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일어난 지, 순직하신 지도 1년이 다 돼 가고 수사 외압이 밝혀진 지도 반 년이 다 되어 가는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 장경태 위원 아니, 이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수사 전문가도 아니지만 결정적 증거이자 단서라는 것은 대국민이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압수수색영장도 신청 안 하셨다고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 장경태 위원 제가 통화내역을 확보했냐 안 했냐 수사 과정을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사실관계만 여쭤보는 겁니다. 영장 청구도 논의해야 됩니까, 이것도? 결정적 단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통화했지 않습니까? 이종섭 장관 통화내역에 국무총리, 경호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부차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그다음 국방부 군사보좌관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것.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실 리 없을 텐데. 안 하셨으면 고의로 이것은 직무유기한 겁니다. 입법부에서 요청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다 속 기록에 남잖아요.

이 통화기록 영장 청구 꼭 하셔야 되고 신원식 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하셔야 됩니다. 입법부의 역할이 뭡니까? 입법 권한이라는 것은 입법자의 취지도 잘 발현되게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저희가 현안질의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국정감사 하는 거지요. 상식 아닙니까, 이 정도는? 이게 법률적 지식이 현저히 많아야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회의 요청입니다, 이것은.

감사원 사무총장님!

○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 장경태 위원 제가 질문서 2개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로 감사원이 질문서 드린 내용이 아주아주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서 과정이 7월 31일 날 감사원이 감사 내용들을 다 적시해서 방통위로 질문서를 주고요, 8월 21일 날 방통위가 MBC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1일에 법원이 가치분을 인용해 주자 9월 26일 날 더 많이 보강해서

감사원이 질의서를 방통위에 넘기는데요. 별첨자료의 이게 질문 같지도 않습니다, 질문이.

‘감사 결과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이 감사 내용을 다 해서 관서의 의견 및 처리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원…… 제가 방통위에 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동판 방통위원장과 지금 현재 김홍일 방통위원장에게도.

감사원, 이것 질문서 보내고 나서 방통위로부터 답변 받았습니까? 사무총장님, 이것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지요? 1·2차에 걸쳐서 7월 31일과 9월 26일 날 방통위에 질문서 넣고 감사원이 만약 답변서 안 받았으면 직무유기하신 겁니다.

방통위로부터 받았습니까? 감사원이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제가 사전에 질문드렸잖아요. 답변 받으셨습니까? 방통위로부터 어떤 처리 결과 대책을 받으셨는지 답변 받으셨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것은 또 새로운 질문이셔서 바로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사무총장님!

이것을 모르신다고요, 이것을? 이것 엄청나게 심각한 사항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국정감사 때? 감사원이 이것을 모른다……

답변할 수 있는 분 증인석 와 주세요, 2차장이든 기조실장이든.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아, 두 번 다 받았다고 합니다.

○**장경태 위원** 답변내용 저희 자료 요구했지요? 자료 요구했는데 왜 자료제출 안 하세요? 방통위로부터 감사원이 자료 받으셨지요? 왜 자료……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것은 일단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감사원이 자료를 받으셨잖아요, 방통위로부터.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두 번 다 받았다고 합니다.

○**장경태 위원** 다 받으셨지요? 그러면 오늘 중에 바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리고 이 질문서가 왜 이렇게 부적절한지, 시간만 쓰고 있는데요, 별첨자료 붙어서 ‘감사 결과 검토사항’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유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서 작성 당시에 감사위원회 의결 받고 나간 문서입니까? 아니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시간 끝나고 답변 기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십시오. 제 질문 시간 아깝습니다.

방문진 임직원 진술 내용 적나라하게 설명까지 다 적시돼 있습니다. 이것 다 감사원 간부들 분명히 책임지셔야 되고요. 왜 MBC와 관련된 MBC의 공동사업계약서 내용까지 다 첨부돼 있습니까? 이게 감사 결과 유출 아닙니까? 그리고 MBC와 방문진에 대한 당기순이익과 손실, 당기순이익과 매출, 재무 상태 이것 왜 다 별첨자료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방통위의 질문서로 들어갈 적절한 내용입니까? 사무총장님, 아니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답변드릴까요?

○장경태 위원 짧게 말씀하십시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지금 제가 잠깐 다 살펴봤는데요.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이런 질문서는 방통위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기관을 감사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방문진을 감사하고 난 뒤에 감독기관에 이런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많이 있는 일입니다.

○장경태 위원 방통위와 방문진이……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장경태 위원 이게 그러면 일상적인 내용이다, 48페이지나 질문서 보낸 내용이 일상적이라고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일상적이라고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경태 위원 제가 확인해서, 감사원이 그렇게 질문지 두껍게 보낸 적이 없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렇지 않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리고 방통위는 이 자료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잖아요. 감사위원회의 결도 안 받은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나갑니까, 밖으로?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질문서는 발부권자가, 감사위원회가 아니고요.

○장경태 위원 이 질문서 내용이 질문입니까, 이게? 감사 자료를 다 적시했는데요, 설명까지. 그러면 설명은 왜 적시했습니까? 감사원이 방문진 감사한 진술서 내용 왜 들어갑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저희들이 이게……

○장경태 위원 이것 감사의 구체적 내용 아닙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이게 그렇게 예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 외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방통위 답변서 꼭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유사한 질문서가 있었는지도 꼭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리고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위원장에게 신청하세요, 답변시간.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

○위원장대리 김승원 사무총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위원장대리 김승원 짧게 답변하시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아까 장경태 위원님께서 전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7월 31일자 질문서인데 왜 8월을 예정해서 했느냐 하시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8월 7일 이렇게 저희가 해서 줬기 때문에, 질문서를 발부했기 때문에 8월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8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렇게 감독기관에 담당 기관의 비위 행위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질문서를 내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외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김승원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부터는 국회법에 따라서 저희가 상임위를 구성하고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가기관에 대해서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때 국회법에 따르면 그 제출할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 장관이 인정할 때만 제출 거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예전에는 국회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거부한 사례가 있었지만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에는 그런 거부 사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반드시 준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현희 위원 감사원은 공직 기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가장 청렴하고 공정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 감사원은 감사원장이 대통령 국정운영 자문기관이다라고 그야말로 자인하고 그리고 정권의 행동대장, 돌격대 이런 등등의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정권은 감사원을 마치 사조직처럼 운용하고 정적과 그리고 반대편을 제거하고 방송 탄압을 하고 그러는 데 도구로서 앞장섰습니다.

액트지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런 해석, 거기에 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만 하십시오.

○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전현희 위원 없습니까? 감사원에 액트지오에 대한 감사 계획 있느냐 질의를 보냈더니 감사원의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2024년도 연간 감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 전현희 위원 계획이 없지요?

감사원은 가장 공정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중 잣대, 내로남불 감사원은 이런 것 없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동의합니다.

○ 전현희 위원 좋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동안 감사를 어떻게 개시하고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2년 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진술을 한 겁니다. 6월에 서해 공무원 감사에 착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진술이 당시의 회의록에 있습니다. ‘새벽

4시에 TV 뉴스를 보니까 연합뉴스 채널을 틀었는데 해경청장이 월북이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직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격분해서 감사원 간부 회의를 소집해서 감사 착수했다' 이렇게 법사위에서 벼젓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감사에도 '권익위 내부의 제보자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비위에 대해서 제보가 있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병호 사무총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권익위 감사를 왜 했냐 그랬더니 '국회의 제보가 있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국회가 아니고요. 국회는 의결을 해야 됩니다. 당시 국힘 국회의원 1명의 제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서영교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그리고 저, 장경태 위원님도 하셨나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하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액트지오에 관해서 감사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이 해 왔던 감사에 착수하는 그 행태를 보면 감사원 사무총장이 혼자서 TV 보다가 격분해서 감사하고 내부의 제보자 1인이 감사하라고 해서 하니까, 국가 정부기관을 몇 달 동안 탈탈터는 그런 감사를 착수하고 정치적 표적 감사를 하고 그냥 자의적으로 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트지오는 지금 어떤 겁니까? 액트지오에 지금 국민의 혈세 22억이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그 회사가 정체가 있는지, 일인회사로서 세금도 못 내고 법인격도 박탈당한 그런 회사에 지금 22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앞으로 5000억이나 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감사원이 감사를 안 해서 5000억이 낭비가 되면 사무총장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런 것 보고 사무총장 격분 안 하십니까? 당장 감사원 간부회의 열어서 감사 착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이중 잣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왜 전임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런 것 보고 바로 감사원 회의 소집해서 감사 착수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 1명이 감사하라니까 권익위라는 그 정부기관을 통째로 몇 달간 감사를 하고 표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를 하고 그런 것을 했던 감사원이 왜 이것은 못 한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권익위 감사, 액트지오 감사 하시겠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모니터링하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감사했다잖아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현희 위원** 내로남불, 이중 잣대 바로 지금 입증하고 계시잖아요.

답변 좀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예?

○전현희 위원 답변 좀 받아 주십시오, 감사할 건지 말 건지.

.....
○위원장 정청래 감사원 사무총장님!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위원장 정청래 아까 중간에 끼어든다고 저한테 질책을 받았는데, 답변 못 해서 억울 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니 지금도 억울할 수 있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액트지오하고 권익위가 해석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액트지오 같은 경우는 아직, 투자 내지 탐사의 아주 초기 의사결정을 지금 할지 말지 하는 그런 단계……

○전현희 위원 22억이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전현희 위원님도 답변시간에는 좀 들어 주시고요.

답변하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런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있는 게 맞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권익위 해석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래도 내막을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난 뒤에 감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훨씬 더 나중에 있을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잘 알겠고요.

사무총장님, 감사원도 현법기관이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감사원에 대해서는 지금 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서 그랬지만……

○위원장 정청래 총장님!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위원장 정청래 감사원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위원장 정청래 감사원을 감사하는 것은 국회입니다. 아시겠어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감사원도 필요할 경우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초기에 거의 감사하는 것이 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검찰에 토스하기 위해서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많아요. 헌법기관으로서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헌법기관으로서, 검찰청은 행정부 일개 부처에 불과해요. 헌법기관이 나서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좀 자존심을 지키세요.

그리고 그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지금 한국발 오일쇼크, 석유파동, 액트지오 이런 것 감사해서 그동안 불신받고 불명예스러웠던 일을 만회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박지원 위원 유병호 라인 아니라고 그랬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박지원 위원 유병호의 길을 걸을 거예요? 지금 총장은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전현희 위원장, 박지원 국정원장이 바로 당신들한테 당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 문제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액트지오만 보더라도,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유전 로또 사고, 대북확성기 신북풍 일으켜 가지고 지지도가 올라갔어요. 이게 대통령입니까? 그렇지만 액트지오는 지금 현재 검증단, 석유공사, 액트지오, 이 수상한 연결고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카르텔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쓰는 카르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올백 문제 권의위에서 엉터리로 한 것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4년 있어요. 우리 4년 있다고요.

총장, 얘기해 보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혹시 오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당장은 감사……

○박지원 위원 아니, 왜 이런 것은 격노 안 해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지금 당장 우리가 감사를 착수하는……

○박지원 위원 대통령부터 격노 잘하는데 왜 이런 것은 격노 안 해요?

그러면 영부인은 공인이에요. ‘관계없다’ 그러면 사무총장의 부인도,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합법적으로 그런 뇌물을 받고 해도 돼요? 이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제가 말씀드리……

○박지원 위원 그렇게 뒤로 자빠지지 말고 공손하게 해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제가 말씀……

○박지원 위원 어디서 그따위 벼룩을 하는 거야! 당신들이 사람들 불러서 조사할 때의 그 태도를 버리란 말이에요. 지금은 검찰도 그러지 않아.

하세요. 답변하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자꾸 막으시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박지원 위원 미안합니다. 해 보세요.

(「사무총장,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총장, 건방……

여보시오!

답변해 보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공직자도 국민입니다. 저희도 인권이 있습니다.

(「공직자도 국민이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인이 조사한 사람들도 다 국민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청래 자, 위원님들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답변하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절대 감사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펴보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저를, 지금 당장 착수하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살펴본다는 의미는 감사하겠다는 말로 해석해도 돼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감사가 필요한지.

○박지원 위원 그냥 살펴본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박지원 위원 공직자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을 때는 뒤로 이렇게 있어요, 저희도.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뒤로 딱 벼텨 가지고, 그것 건방진 태도 아니에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제가 뒤로 안 앉아 있었습니다. 오해를 하신, 앞으로……

○박지원 위원 지금 당겼어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여기 이렇게 있다가요 이 정도 당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박지원 위원 자, 아무튼 우리가 4년을 지켜볼 거예요. 감사원, 잘하세요.

오늘 보면 법원행정처나 현재는 합격점을 주고 싶어요. 그러나 감사원은 진짜 말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공수처장, 아까 서영교 위원 피 토하는 말씀 들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박지원 위원 대통령이나 신원식 국방장관 등 여러 사람들 통화기록 확보하셨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제가 지금 위원님들……

○박지원 위원 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지만 오늘 많이 배우고……

○박지원 위원 아, 배울 필요도 없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또 수사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갑니다.

○박지원 위원 만약에 그것이 확보 안 됐을 때 특검이 된다거나 또 공수처에서 계속 간다거나, 우리가 법사위에서 만날 때 그 추궁을 당한다 이거지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세요. 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유념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어디 계시지?

○위원장 정청래 좀 이따 하시지요, 추가로 더 드릴 테니까. 한번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것 하고 끝내 버릴게요. 하나만 딱 말하면 돼요.

○위원장 정청래 그래요?

1분만 더 드리세요.

○**박지원 위원** 오늘 수원고법에서 판결을 아주 잘한 것이 있습니다. 사법부를 이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대통령 장모,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가 27억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1심에서도 패소를 했는데 수원고법 행정1부 노경필 부장판사께서 항소 기각을 했어요. 잘한 거예요. 이런 판결을 해 줘야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를 존경합니다.

저는 12년간 법사위원을 하면서 늘 사법부만 존경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것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사법부에 대한 위원님의 뜻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재보충질의 마지막 김승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최달영 사무총장님,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한 사람의 국민이다 이런 말씀 하셨던데 감사원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공직사회에 어떠한 형태의 감사를 하셨는지 지금 본인은 잊으신 것 같습니다.

21대 후반기에 이 법사위에서…… 공직사회에 대해서 감사원이 영장 없이 공무원들 핸드폰 다 가져다가 포렌식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 것까지 내라 그래서 안 내면 감사방해죄 운운하면서 그렇게 공직자들을 압박시켰던 그 장본인들이 지금 다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것 강압 감사했다 그래서 지금 공직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도 강압 감사를 인정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엊그제 일인데 그것 뒤돌아보지 못합니까? 본인이 여기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강압적이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요?

월성원전 그것 아니다, 그것 감사할 사항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나온 자료,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포렌식해서 나온 자료 다 검찰에 넘기더니 결국에는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권 바뀌고 MBC 감사하고 또 어디지요? 방통위 감사하고.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감사한 결과 지금 계속 우리 국가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감사원은 속칭 유병호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을 정도로 감사원의 국격이 하락했는데 그에 대한 반성이 없이 본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

사무총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의 지난날 행태를 돌아보시고 빨리 강압 감사 또 월권 감사, 불법 감사에 대해서 이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야 됩니다. 저희가 감사원법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감사원도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오늘 나와서 수고하시는데 첫 번째는 기후위기소송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아주 획기적인 판결로 행정부의 기후위기를 태만히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 줘서 독일이 신재생에너지, 기후위기에 굉장히 잘 대처하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금 3년 7개월, 벌써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 결론 언제 납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공개 변론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것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재판부에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지금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제가 좀 질의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탄소감소정책에 의하면 매년 1.2%, 1.4% 정도밖에는 감소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파리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감축해야 될 분량이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막판 한 해 남겨 놓고 17%를 감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제인, 기업 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고요. 하루속히 현재에서 기후위기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사 탄핵재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가 증거 채택 혹은 증거 신청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남댁이라고 하는 강미정 씨 증인 신청했는데 기각이 된 것으로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는데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고 또 포렌식을 해야 될 핸드폰을 제출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면 그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고 또 현재 같은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극적인 재판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재판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인 신청에 대해서 과감하게 받아들이기를 재판관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러면 그것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증인 채택이 안 된 그 부분은 필요성이 없다고 재판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단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그 증인의 진술서가 서증으로 제출이 됐고 그 서증에 대해서 상대방이 증거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증 내용이 증거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증인이 필요가 없어서 기각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변론조서에서도.

이상입니다.

○**김승원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그러면 서증을 더 내면, 강미정 씨가 더 자세하게 써서 내면 그것도 증거로 채택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증거절차를 거쳐서, 당연히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웬만하면 질의를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또 재재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이 재재보충은 3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인데요. 김용민 위원

님, 장경태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이렇게 세 분, 3분씩 시간 딱 지켜서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시간을 염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용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법원의 판결이 존중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많은 증거자료와 증언을 듣고 직접 증거조사를 해서 충분히 재판을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라 그 결과에 대해서, 물론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못한 수준의 증거조사와 그것보다 못한 수준의 자료만 검토하고 법원이 내린 결론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원칙적으로 충실한 재판을 통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모든 법관들이 염원하는 바이고 또 노력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보다 못한 수준의 절차를 통해서, 그것보다 못한 수준의 증거조사를 통해서 재판이 진행되거나 법원의 결론과 다른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답변을 해 주세요,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는 취지가 관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동완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서 법원의 판결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동완 검사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이 법원에 의해서 인정된 사건이고 수많은 기록과 수많은 증인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통해서 법원이 확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때 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가 종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바 있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기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고 더 나아가서는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는 그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했어요.

심지어 이 사건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국민참여 배심원들 다수가 공소권 남용이다 이렇게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가서 이게 다 뒤집어져 버렸네요. 법원 입장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원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현재사무처장님, 현재는 엉뚱하게도 이 사건에 대해서 3명의 재판관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봤고 2명의 재판관도 위법하지만 파면 사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것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가장 완벽하다고 했던 이 사건은 기각하고 이정섭 사건은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준성 사건은 시간을 꽉 미뤄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닐까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런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리에 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장경태 위원**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8월경까지 답변'이라고 해서 8월경이라고 썼다고 답변 제안하신 분 누구시지요? 기조실장님인가요, 1차장이신가요? 아까 쪽지 준 사람 누구세요?

기조실장님, 증인석 가시고요.

사무총장님, 감사원은 누구에게 감사받는다는 답변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감사받습니까, 감사원은?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저희가 통상 말하는 감사는 매년……

○**장경태 위원** 대통령실로 감사받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면 국무총리실, 민정실로부터 받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국회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국정감사 받으시잖아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그 답변하는데 왜 이렇게…… '어디서 감사받습니까?' 했을 때 그냥 국회라고 하시면 되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장경태 위원** 아주 쉬운 답변을……

그리고 아니, 고위공직자, 국민 맞지요. 그렇게……

그러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받은 산자부 공무원, 권의위 공무원, 방문진, KBS, 다 국민 아닙니까? 그때 자료 요구할 때, 감사하실 때 자료 요구 서면으로 하셨어요? 구두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서 산은이랑 한전도 다 감사하셨잖아요. 그때 다 서면, 다 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감사했는지, 감사를 다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구두로 하신 것도 꽤 되고 병원에서도 그것은 인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다 국민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며 산은이며 한전이며?

이 가족들이 저희한테 눈물로 호소합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인격 모독의 감사를 받았다고. 그런데 무슨 '국민'입니까?

기조실장님, 지금 사무총장님께 8월경 답변서이기 때문에 8월경이라고 했다라고 하셨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이 질문지, 질문서에 감사 내용 이렇게 많이 기록하는 게 일상적인 일입니까?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사안에 따라서 그 양은 다른데……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이냐고요. 27페이지, 48페이지짜리 질문서를 내면서 별첨으로 감사 내용, 감사 결과라고 써 있습니다, 명백하게. 감사 결과라고 써 있는데요, 별첨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 감사 결과 나가는 게 일상적인 일이라고요? 사례 하나라도 갖고 오시고 못 하시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예?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기본적으로 저희 프로세스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서 보내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몰라서 질문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이렇게 두꺼운 질문서 있습니까, 감사원에?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장경태 위원 이렇게 개인정보까지 다 있는데요? 감사원에서 진술한 내용까지 다 적시된 질문서가 있다고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샘플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리고 8월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8월 현재까지 모모·땡땡땡 사원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폐기하도록 하였다, 보안이 중요한 이사회 회의 자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8월 3일 날 인사 나면 어떡하려고요?

이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러니까……

○장경태 위원 아니, 8월경까지 원래 감사결과보고서 쓰려고 했는데 그냥 7월 31일 자로 방통위에 급조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질문서를.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위원님, 그것은……

○장경태 위원 상식적으로…… 한글 모르세요? 한글을 누가 이렇게 씁니까? 7월 31일 날 나가는 문서가 8월경에 이렇게 폐기하도록 하였다라고 누가 쓰냐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한글……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것 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태 위원 이것은 위원장에게 신청하시고.

기조실장님과 사무총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위증죄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청래 답변하시겠어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잠깐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하세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걸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저희가 질문서를 작성해서 기관에 보낸 날짜가 2023년 7월 31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 기간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던 게, 8월 7일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그것을 기재를 하자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거기에 ‘8월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7월 현재’ 또는 ‘7월 31일 현재’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마 답변 기한까지 좀 고려하다 보니까 8월로 표시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공문서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래서 그것은 정확지는 않은데 그게 질문서의 어떤 취지나 내용이 달라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말씀하신 분 누구시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방금 장경태 위원님 감사원 질의하는 것 들으면서 권익위 감사에서 당시의 질문서에 똑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실명과 직업, 신분이 보호돼야 할 사람을 그대로 노출해서 질문지를 보내서 그에 대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당시 감사원, 아마 최달영 총장도 포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감사한 간부들을 형사고발을 한바 있습니다.

개인정보 누설 이런, 법원에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비밀을 보장해서 절대로 실명을 판결문에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그대로 누설을 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 보니 개인정보 노출, 법령 위반은 밥 먹듯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도 없는 것이 감사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감사원 간부 15명가량이 공수처에 감사원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금 고발 조치되어 있고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달영 총장이 여기에 범죄 이런 게 없었고 행정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에서 업추비 카드 제출 요구 등 감사를 통해서 물러나지 않는 산하공단의 이사를 사퇴시킨 환경부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자리를 물러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현재 형사적으로 피의자의 신분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에서 제가, 이해충돌 유권해석에 권익위원장이 개입을 해서 직권남용이라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감사를 개시한 것도 내부 직원 1명의 제보로 유권해석에 관한 감사를 그렇게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비위라면서 감사를 한 것이 감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 하겠다는 게 사무총장의 입장인데 이러한 이중 잣대, 내로남불, 감사원이 감사원으로서 공정한 감사원이다, 자격이 있습니까?

당시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원장이 정무위에서 유권해석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이 감사원 감사 의뢰를 하겠다고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 날 국민권익위에 감사가 들어 왔습니다.

오늘 위원들 3명이 액트지오에 대해서 그리고 권익위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잣대라면 당장 감사 착수하셔야지요.

하시겠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전현희 위원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답변 받아야 됩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답변하시겠어요, 사무총장님?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답변하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전현희 위원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답변하시겠냐고.....

○전현희 위원 감사하겠냐, 마느냐 이 말만 답변하십시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것만요?

○위원장 정청래 전현희 위원님은 이제 질의 끝나셨고요.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감사할 거냐 말 거냐만 얘기를 하라고 하시니까요,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그 두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가.....

○박지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

○위원장 정청래 자료.....

○박지원 위원 예, 자료를 감사원에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 정청래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한테 요구하는……

○위원장 정청래 예.

○박지원 위원 감사원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보내 줍니다.

첫째, 월성원전 관계, 여러 위원님들도 요구를 했지만.

두 번째, 대통령실 이전 관계.

세 번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보고서.

네 번째, 유병호 전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이 대통령실을 어떻게 출입했는가, 방문 횟수 등 구체적 사항을 요구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저렇게 똑똑한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현희 권의위원장이나 서해 피살 사건에 우리 국정원 직원들 어떻게 했는가 자료 좀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지금 박지원 위원님께서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 왜 안 합니까, 제출?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자료는 가능한 것들은 하여튼 빨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말씀 잘하셨고요. 좋아요. 가능한 것이 무엇이고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왜 불가능한지까지 첨부해서 박지원 의원실에 신속하게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질의는 다 마쳤고요.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12명의 입법청문회 증인과 3명의 참고인에 대해서 증인으로 출석해라 하는 것은 우편으로도, 구두로도 할 수 없어서 직접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만나서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했고 전원 수령했습니다. 이 출석요구서를 직접 수령을 한 만큼 그 순간부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7일부터 22일까지 폴란드·루마니아 해외 출장이라고 알려와서 저희 보좌관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맞는지. 그랬더니 맞았어요. 5월 31일 외교부에 출장을 상신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이유 있는, 출석이고……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했으므로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대신해서 국방부차관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서영교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안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대 국회 법사위 제1차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다루는 곳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위원장 정청래 헌법 전문가들이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위원장 정청래 헌법 조항에 오탏가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헌법 오탏요?

○위원장 정청래 예, 130개 조항 중에서 오탏가 있다는 것 혹시 아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130조를 한번 보세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헌법 개정에 대한 건데요,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표를 편지봉투에 붙여 편지를 부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투표에 ‘부쳐’를 써야 되는데 ‘붙여’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오탏입니다.

전 국민이 투표한 87년 헌법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에 텔레비전 시사교양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미 한 발언입니다. 다 깜짝 놀랐습니다, 시청자들도 그렇고. 아니, 우리 헌법에 오탏가 있다니. 실제로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몰랐습니다. 오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130조를 보면요 ‘국민투표에 붙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탏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탏가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국민투표를 한 이 헌법 자구까지 지금 보면 오탏가 이렇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22대 법사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법무부, 국방부가 출석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문제이고, 이 부분은 나름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와 절차를 밟아서 반드시 불이익을 당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법 한도 내에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질의 태도도 국회의원들이 잘해야 되겠지만 답변하는 태도도 여러분들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오늘 특히 많은 국민들이 텔레비전 시청을 하고 있었어요. 국민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냥 공손한 것이 공손한 태도다 이것이 아니라 답변 내용도 태도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오늘 중간중간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서 다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본인이 잘 알 겁니다. 국민들에게 답변하는 태도가 불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국회법 49조 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위원장으로서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이용해서 퇴장도 시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퇴장 피해의 첫 번째 케이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퇴장시키면 오히려 여기서 진땀을 안 빼고 집에 가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30분 퇴장, 10분 퇴장, 20분 퇴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답변하는 태도, 내용 모두 잘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간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국민을 불편하게 한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조족지혈이다 이렇게 겸허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그분들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법사위는 민생 사안이 없습니까? 법사위에 있는 모든 것이 민생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본인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 좀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국회의원들도 사람이고 가급적이면 조곤조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지금 민생 상태, 스트레스, 울화통 이런 것 생각하면 그래도 위원들이 많이 자제하고 질의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균형 있게 앞으로 진행을 할 테니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귀가를 하시면서 국민들에게 불손한 답변 태도는 없었는지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기관 관계자,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와 국회방송 등 언론인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2인)

성명	직업	사유
박성재	법무부장관	법안 관련 주무부처 장관
신원식	국방부장관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 주무부처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관으로 수사 외압 의혹에 불복하여 항명죄로 재판 중인 당사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채 해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 해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장으로 사망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자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채 해병 사망 사건 당시 직속 상관으로 당시 상황 증언 가능
이용민	포병여단 포7대대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성명	직업	사유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핵심 당사자

참고인(3인)

성명	직업	사유
김정민	변호사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의 변호사로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참고인
김규현		
김경호	변호사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 이용민 대대장의 변호사로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참고인

○출석 위원(11인)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정청래

○첨가 위원(1인)

조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전문위원 한석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사무총장 최달영

제1사무차장 현완교

제2사무차장 김영관

공직감찰본부장 신치환

국민감사본부장 최정운

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차장직무대행 송창진

기획조정관 이형석

수사기획관 차정현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차장 배형원

기획조정실장 윤성식

사법지원실장 이형근

사법정보화실장 원호신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환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김정원

심판지원실장 하정수

기획재정국장 최혁

심판정보국장 이영일

【보고사항】

○**의안 회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0)

6월 11일 회부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7)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8)

이상 5건 6월 12일 회부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7)

이상 10건 6월 13일 회부됨